



신흥공여국 ODA정책과 현황 : 아이슬란드

2015. 9

신흥공여국 ODA정책과 현황 : 아이슬란드

2015. 9

KOICA

저자

전 명 현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구개발팀 대리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남미 지역학 석사
- 주요 연구
 - ▷ 2009. “타 원조기관의 ODA 평가제도”.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 ▷ 2015.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성남 : 한국국제협력단.
- 보조연구원 : 김재원, 박혜영, 정동길

본 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본 연구의 내용은 출처 및 집필자를 명시하는 한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KOICA 홈페이지(<http://www.koica.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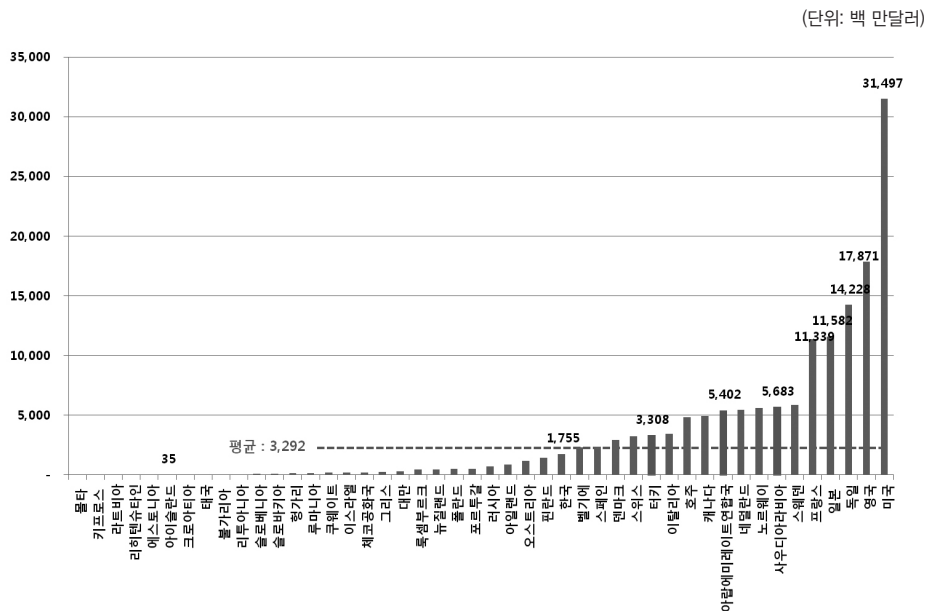
I. 서론	1
II. ODA 추진 환경	3
1. 외교정책과 주요 관계	3
2. 외교정책과 개발협력과의 관계	5
III. ODA 추진 체계	8
1. 법적·정책적 기반	8
2. 개발협력 수행조직 및 운영	12
2.1.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13
2.2. 원조개발청(Icelandic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15
IV. ODA 추진 현황	19
1. 규모 및 배분	19
2. 유형(양자, 다자)	22
3. 분야	23
4. 주요 파트너	26
4.1. 양자협력 파트너	26
4.2. 다자협력 파트너	28
V. 결론	33
1. 요약	33
2. 시사점	35
참고문헌	38
[부록 1] 아이슬란드 개발협력 법률(국·영문)	40
[부록 2] 아이슬란드 국제개발협력 이행에 관한 규정(국·영문)	49

표 목차

【표 1】 아이슬란드 개발협력의 강점	5
【표 2】 아이슬란드 국제개발협력 전략의 목표, 가치, 원칙	9
【표 3】 ‘2011-2014 전략’과 ‘2013-2016 전략’ 요약표	10
【표 4】 파트너 국가 선정 기준	16
【표 5】 원조개발청(ICEIDA) 수행 점검 지표	18
【표 6】 2013년 세부분야별 원조 규모	24
【표 7】 한국과 아이슬란드의 경제력 순위 및 ODA 규모 비교	35

그림 목차

【그림 1】 2013년 국가별 순 ODA 공여 규모	1
【그림 2】 2005-2013년 한국과 아이슬란드의 GNI 대비 ODA 비율	6
【그림 3】 아이슬란드 외교부(MFA)와 원조개발청(ICEIDA) 간 업무 분담	12
【그림 4】 외교부(MFA) 조직도	13
【그림 5】 아이슬란드 개발협력 운영체계	14
【그림 6】 2013년 원조개발청(ICEIDA) 지역별 배분	17
【그림 7】 2013년 원조개발청(ICEIDA) 분야별 배분	17
【그림 8】 최근 10년간 아이슬란드 순 ODA 규모와 GNI 대비 ODA 비율 추이 ...	19
【그림 9】 2013년 OECD DAC 신흥공여국 및 일부공여국의 ODA/GNI 비율	20
【그림 10】 2009-2013년 아이슬란드 원조 지역별 배분 현황(순지출 기준)	21
【그림 11】 2013년 아이슬란드 원조 상위 5개 수원국 현황(순지출 기준)	21
【그림 12】 2011-2013년 양자 및 다자원조 비율	22
【그림 13】 2013년 다자원조 세부 배분 비율	23
【그림 14】 2013년 분야별 원조 배분 비율	24
【그림 15】 2011-2013년 분야별 원조 금액 추이	26
【그림 16】 지난 5년간 세계은행그룹에 대한 평균기여금액	30
【그림 17】 2013년 OECD DAC 회원국 순 ODA 규모	33



주: OECD 통계사이트의 DAC, Non-DAC 국가 등 총 46개국의 통계 수치임.

따라 원조 효과성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2013년 OECD DAC에 25번째로 가입한 아이슬란드의 ODA 정책과 추진 현황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한국 원조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아이슬란드의 외교 정책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치 등 ODA를 추진하기 위한 환경을 분석하고, 법적·제도적 기반 현황과 수행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DAC 공여국으로서의 ODA 규모, 유형, 주요 분야, 주요 파트너 등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최근 DAC에 가입한 신흥공여국인 아이슬란드 원조에 대한 국문 선행 연구자료가 없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지만, 한편으로 아이슬란드의 원조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문헌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이슬란드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이하 MFA) 자료, 원조개발청(Icelandic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이하 ICEIDA) 자료, DAC 특별 검토 문서 등을 전반적으로 활용하였음을 밝힌다.

II. ODA 추진 환경

1. 외교정책과 주요 관계

아이슬란드는 유럽 서북부 북대서양에 위치한 섬나라로서, 정식 명칭은 아이슬란드 공화국(Republic of Iceland)이다. 아이슬란드는 874년 노르웨이로부터 정착민이 유입된 이후 노르웨이(1262-64년)와 덴마크(1376년)의 지배를 차례로 받았다(Wikipedia). 이후 1918년 동구권의 연합 조약(Union Treaty)에 의해 독립국이 되었지만, 아이슬란드가 외교 업무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전인 1940년까지 덴마크의 지배를 받았다. 덴마크로부터 완전한 독립 이후에도 영국과 미국이 차례로 아이슬란드를 점령하여 공군기지로 활용하는 등 외부 세력의 침입에 끊임없이 노출되어왔다(Gunmundur Fridrik Magnusson, 2011).

1944년 현재의 공화국 형태를 이루기 전까지 아이슬란드의 공식적인 외교정책은 없었으며, 이 시기의 관심은 덴마크로부터의 자율성 회복과 어업과 농업이었다. 또한 냉전시기에는 물질적 이익(material interests)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국제사회 및 기구에서의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이슬란드는 국제사회에서의 외교 활동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변경하였다(Guðjón Önn Sigurðsson, 2012 : 12). 아이슬란드의 국제적인 주요 외교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질 수 있는데, 유럽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노르딕 국가와의 협력, 그리고 UN을 포함한 국제기구에서의 참여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유럽 지역 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위해 1994년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¹⁾ 가입을 통해 지역 공동체 참여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1999년 유럽의회(Council of Europe)의 의장직을 맡는 등 지역연합 및 조직에서의 역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Guðjón Önn Sigurðsson, 2012 : 30). 이후 2009년, 아이슬란드는 유럽지역에서의 가장 큰 지역공동체 중 하나인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1) 유럽경제지역(EEA) : 유럽연합(EU) 15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으로 구성된 통합시장. 1994년 1월 1일에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참여 국가들은 하나의 기본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단일 시장에 통합됨으로써, 상품, 자본, 서비스, 인력의 자유 이동을 허용한다(아이슬란드 MFA 홈페이지, <http://www.mfa.is/tasks/european-co-operation>, 검색일 : 2015.08.18).

EU)에 가입을 국회의 지시를 통해 추진한 바 있으나, 2013년 정권의 교체와 어업 문제로 인한 EU와의 갈등으로 인해 EU 가입을 위한 협상을 중단하였다. 이후 2015년 3월 아이슬란드는 EU 의장국과 집행위원회에 EU 가입 신청을 철회한다는 공식 문서를 전달하면서, EU 가입을 위한 절차는 일단락되었다(한국경제, 2015.03.14). 아이슬란드의 EU 가입은 향후 외교 정책 변화에 따라 재추진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EU 가입이 된다면 무역,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의 쟁점이 달라져 이에 대한 외교 전략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두 번째로, 아이슬란드는 인근지역인 노르딕(Nordic) 국가들과 활발히 협력해왔다. 노르딕 국가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에 위치한 다섯 나라를 말한다. 이들 나라는 1952년 설립된 북유럽 이사회(Nordic Council)의 회원국인데, 아이슬란드는 초기 설립부터 참여하고 있다. 이후 1971년 북유럽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결정과 권고사항을 집행하는 정부간 협력체인 북유럽각료이사회(Nordic Council Ministers)에 가입하여, 2009년과 2014년 의장국 역할을 맡았다(스웨덴 개황, 2009). 또한, 북극의 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적으로 1996년 설립된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에도 가입하여 북극 천연자원의 개발과 보존 등을 위한 정책결정과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두산백과). 이외에도 아이슬란드는 MFA 내 북유럽 협력 사무국(The Secretariat for Nordic Cooperation)을 설치하여 북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에 중점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세 번째로, 아이슬란드는 UN을 비롯한 다수의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활동 중에 있다. 앞서 언급한 유럽 지역과 노르딕 국가들과의 협력 기구 이외에도 50여개 이상²⁾의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각 분야에서의 협력과 외교 활동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외세의 오랜 침입으로 인해 자국의 보호와 상업적 이익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었었지만, 1990년대 이후로는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서의 외교 활동과 최빈국에서의 빈곤감소와 삶의 질 개선에 기여 등을 개발을 위한 주요 외교 전략으로 내세워 개발원조 분야에서의 참여와 기여

2) 아이슬란드가 가입한 국제기구 및 기관은 Arctic Council, Austrailia Group, BIS, CBSS, CD, CE, EAPC, EBRD, EFTA, FAO, FATF, IAEA, IBRD, ICAO, ICC, ICRM, IDA, IFAD, IFC, IFRCS, IHO, ILO, IMO, IMSO, IOC, IPU, ISO, ITSO, ITU, ITUC, MIGA, NATO, NC, NEA, NIB, NSG, OECD, OPCW, OSCF, PCA, Schengen Convention, UN, UNCTAD, UNESCO, UPU, WCO, WHO, WIPO, WMO, WTO 등이다(CIA World Factbook, 검색일 : 2015.08.07).

도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개발원조 정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2. 외교 정책과 개발협력과의 관계

아이슬란드의 개발협력 정책은 외교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전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아이슬란드의 외교 정책이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 내의 활동에 적극적 참여’로 변화한 것처럼, 개발협력 분야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유사하게 이어져, 국제사회의 원조 활동에서 아이슬란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아이슬란드 MFA는 외교 정책의 핵심 분야를 국제 관계(International relation), 국제 무역(International trade),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으로 명시하고, 국제개발협력이 외교 정책의 필수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이슬란드가 보유한 세 가지 강점을 기본으로 삼아 개발협력에서 책임감 있는 참여를 이행할 것을 강조한다.³⁾

〈표 1〉 아이슬란드 개발협력의 강점

-
-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경험
 - 재생에너지 자원 사용의 경험
 - 성 평등 캠페인에서의 역사적인 이정표
-

출처: <http://www.mfa.is/foreign-policy>, 검색일 : 2015.08.07

아이슬란드 MFA에 따르면, 아이슬란드의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목표는 ‘빈곤퇴치 및 기아 근절에 기여하고, 최빈국에서의 생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국제사회 내의 책임감 있는 구성원이 되며, 더불어 아이슬란드의 정치적, 민족적 책임감을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외교 정책은 원조 전략에 고스란히 연계되어 2008년 10월 1일 발효된 ‘아이슬란드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Act no. 121/2008 Iceland’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과 이후의 개발협력에 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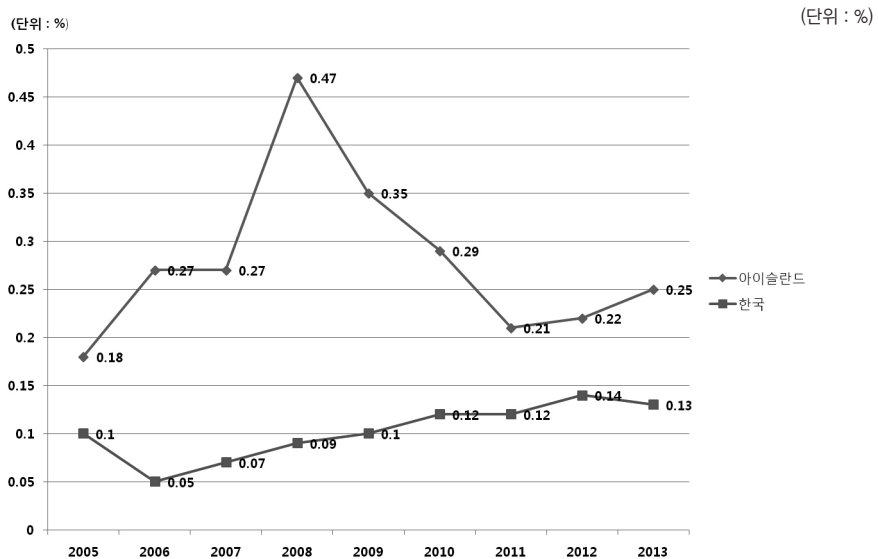
3) 아이슬란드 MFA 홈페이지, <http://www.mfa.is/foreign-policy/>

전략 문서에 동일하게 반영되었다. 게다가, 아이슬란드의 개발협력 전략은 빈곤, 사회, 부정의, 생활조건의 차이 개선 뿐만 아니라 인권, 성 평등 증진, 평화와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주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아이슬란드의 외교 및 개발협력 정책에서는 국제사회 내의 책임감 있는 일원이 되고,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등 국제적 선언과 기준에 맞는 개발협력 활동을 할 것을 중요시 하고 있다. 이에, 아이슬란드는 원조 대상국과 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원조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2008년 개발협력 법률(Act no. 121/2008)에 GNI 대비 ODA 비율 0.7% 달성이라는 UN의 공식 목표를 2019년까지 달성할 것을 명시하여 국제적 수준의 ODA를 이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아이슬란드는 2000년 이후로 원조 규모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2008년에는 GNI 대비 ODA 비율이 0.47%에 달하였다. 2008년 기준 DAC 국가들의 평균 비율이 0.41%이므로 이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잠시 주춤하였지만, 다시 2011년부터 회복세를 보여 2013년 GNI 대비 ODA 비율은 한국의 2013년 실적치인 0.13%의 두 배인 0.25%를 달성하였다(그림 2). 아이슬란드의 이러한 원조 활동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

〈그림 2〉 2005-2013년 한국과 아이슬란드의 GNI 대비 ODA 비율



출처: <http://stats.oecd.org>, 검색일: 2015.08.07

덴, 핀란드, 영국 등과 같이 GNI 대비 ODA 비율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과 인접해 있어, 이들 국가의 원조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도 UN의 공식목표인 0.7%에 전념하고, 2002년 몬테레이와 2008년 도하에서 채택된 개발재원에 관한 합의문 등 국제적 선언에 기반한 개발협력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아이슬란드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2000년 이후로 아이슬란드 정부는 개발(Development)을 국가의 주요 우선순위로 내세워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DAC 가입을 통해 국제원조사회 내 책임감 있는 일원이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였다. 비록 DAC 회원국은 아니었지만, 1999년 이후로 DAC에 ODA 실적을 보고하였으며, 2000년 이후 대부분의 DAC 정례회의에 참석하였다. 또한 DAC 원조효과성 작업반에 참여하고, 성 평등 네트워크 및 통계작업반의 옵저버로 참여하는 등 DAC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왔다. 이에,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DAC 가입을 위한 특별 검토(Special review)를 받고 2013년 3월 14일 OECD DAC에 25번째로 가입하게 되었다(OECD, 2013 : 13).

III. ODA 추진 체계

1. 법적·정책적 기반⁴⁾

아이슬란드는 2013년에 OECD DAC에 가입한 신흥공여국이지만 원조수혜국 리스트에서 벗어난 1970년대부터 꾸준히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비교적 탄탄한 개발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아이슬란드 개발협력을 위한 초기 법적 기반은 1971년 ‘개발도상국에 대한 아이슬란드 원조(Iceland’s Assistance to the Developing Countries)’ 법률(Act no. 20/1971)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 법률에서는 GNI 대비 ODA를 최소 1% 달성하겠다고 제시하였는데, 당시 국제적으로 세계은행의 ‘피어슨 보고서(1969년)’와 UN의 ‘틴버겐 보고서(1970년)’에서 선진국 GNP의 0.7%를 공적개발원조로 공여⁵⁾할 것에 대한 국제적 목표를 제시한 데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아이슬란드는 1981년에 MFA 산하 조직으로 아이슬란드 양자개발협력을 담당하는 ICEIDA를 설립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MFA와 ICEIDA의 양분화 된 구조로 ODA 수행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ICEIDA는 ICEIDA 법률(Act on ICEIDA no. 43/1981)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률에서도 GNI 대비 ODA 비율 0.7%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보여주었다.

아이슬란드는 2000년 이후로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켰으며, 2008년에는 ODA 규모가 총 4,800만 달러에 이르며 개발협력을 추진한 이래로 최고치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2008년 아이슬란드 개발협력 법률(no. 121/2008)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며 아이슬란드 개발협력 추진의 법적 근간을 다졌다. 동 법률에서 아이슬란드 개발협력의 목적을 빈곤과 기아를 근절하고, 최빈국에서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명시하며,

4) 아이슬란드 MFA 홈페이지, <http://www.mfa.is/foreign-policy/development-cooperation/>의 내용을 주로 번역 및 정리하였음을 밝힌다.

5) 피어슨 보고서(1969년)는 세계은행, IMF 연간 총회에 제출된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이라는 보고서로 원조의 효과에 대해 연구하고, 개선방안으로 GNP의 0.7%를 공적개발원조로 제공할 것 등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틴버겐 보고서(1970년)는 개발의 방향성과 활성화에 대해 정리한 ‘제 2차 UN 개발 10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개도국 전체의 연평균 성장률을 최소한 6%로 할 것과 선진국 GNP의 0.7%를 공적개발원조로 공여할 것 등의 목표를 제시하였다(KOICA, 2013 : 50)

인권, 교육, 보건, 양성평등, 지속가능한 발전,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경제 및 사회 발전 증진을 위한 개도국 정부 지원 등의 전반적인 활동을 할 것을 밝혔다.

또한, 개발협력 추진의 최고 권한은 MFA에 있으며, MFA 장관이 2년 마다 ‘4개년 국제 개발협력 제안서(Icelandic Government’s Programme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or a four-year period)’를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개발협력 추진 절차를 구축하였다. 이 제안서에는 아이슬란드 개발협력의 장·단기 정책과 기여방안, 목표 달성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GNI 대비 ODA 비율의 연도별 목표도 제시하여야 한다. 기존의 개발협력 관련 법률에서 양자 협력에 대한 내용만 다루었던 것에 반해, 2008년 개발협력 법률은 MDGs, 파리선언 등 국제 선언들의 가치를 반영하고 다자협력, 인도주의적 지원, 평화유지 활동 등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 아이슬란드 개발협력의 전체적인(holistic) 기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2008년 법률을 근거로 두 차례의 ‘아이슬란드 국제개발협력 전략(Strategy for Iceland’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을 수립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았다. 첫 번째는 2011년 수립된 ‘아이슬란드 국제개발협력 전략 2011-2014’이고, 두 번째는 초기 전략의 개정판으로 2013년 수립된 ‘아이슬란드 국제개발협력 전략 2013-2016’이다. 두 전략은 개발협력의 목표, 추구하는 가치, 개발협력의 추진 원칙을 동일하게 서두에 밝히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아이슬란드 국제개발협력 전략의 목표, 가치, 원칙

개발협력의 목표
• 빈곤 퇴치, 기아근절, 그리고 최빈국에서의 삶의 질 개선 • 인권, 교육, 보건, 양성평등, 지속가능한 발전,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경제, 사회발전 증진을 위한 개도국 정부 지원
개발협력의 가치
•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존중, 인간 다양성, 관용, 정의, 연대
개발협력의 원칙
• 책임성(Responsibility) :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개발활동을 이끌고, 협력국과 시행책임 및 결과를 공유 • 성과(Results) : 행정, 절차, 방법 등 개발 프로그램 이행의 모든 측면에서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최대화하는데 기여 • 신뢰성(Reliability) : 개발협력의 파트너로서 전문성과 청렴성을 통해 국제적 존중을 확보

출처: 아이슬란드 국제개발협력 전략 2011-2014, 2013-2016

상기 개발협력의 목표, 가치, 원칙 등은 2008년 법률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동일하나, 전략 이후 부분에서 언급되는 개발협력의 우선순위 분야, 중점국가, 다자협력 중점 기관 등은 연도별 흐름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아이슬란드 개발협력의 우선순위 분야가 2011-2014년 전략에서는 천연자원, 인적자원, 평화구축이었지만, 2013-2016년 전략에서는 천연자원, 사회 인프라, 평화구축으로 일부 변화하였다. 또한, 중점국가도 2011-2014년 전략에서는 아프가니스탄, 말라위, 모잠비크, 팔레스타인, 우간다로 5개국이었지만, 2013-2016년 전략에서는 말라위, 모잠비크, 우간다 등 아프리카 3개국만이 중점국가로 남아있다. 두 전략간 상이한 부분들은 <표 3>을 통해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다.

〈표 3〉 ‘2011-2014 전략’과 ‘2013-2016 전략’ 요약표

구분	2011-2014 전략	2013-2016 전략
ODA/GNI 비율 목표 (Ratio of GNI)	• 2011(0.21%) → 2014(0.28%) • 2019(0.7%)	• 2017(0.5%) • 2019(0.7%)
우선순위 분야 (Priority Sectors)	•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 어업, 에너지 • 인적자원(Human capital) - 기초서비스, 위생, 개선된 모자보건, 성인교육, 아동교육 등 • 평화구축(Peace-building) - 거버넌스, 재건	•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 어업, 에너지 • 사회 인프라(Social infrastructure) - 교육, 보건 • 평화구축(Peace-building) - 굿 거버넌스, 재건
범분야 이슈 (Cross-cutting themes)	• 성 평등(Gender equality) - 성 평등 주류화, 성인지 예산 준수 • 환경(Environment) - 기후변화 적응 지원을 위한 국제적 행동에 참여	
양자협력 주요 파트너 (Bilateral Partner countries)	•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 긴급구호, 여성평등 등 • 팔레스타인(Palestine) - 인도주의 지원, 난민 지원 등 • 말라위(Malawi) - 교육, 보건, 위생에 중점 • 모잠비크(Mozambique) - 어업, 보건에 중점 • 우간다(Uganda) - 어업, 보건, 지구개발에 중점	• 말라위(Malawi) - 교육, 보건, 위생에 중점 • 모잠비크(Mozambique) - 어업, 보건에 중점 • 우간다(Uganda) - 어업, 보건, 지구개발에 중점 * 아프가니스탄 긴급구호와 팔레스타인 난민 지원은 중점협력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지속적인 기여금과 전문가 파견으로 이행할 것을 명시

인도주의, 긴급구호 (Humanitarian and emergency assistance)	•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 정기적 기여, 전문가파견 등 • 중앙긴급구호기금(CERF) – 정기적 기여, 북유럽 국가들 활동에 적극 참여 • 세계식량계획(WFP) – 전문가 단기 파견, 위기사항시 WFP 활동에 참여 • 비정부기구(NGOs) – 적용과 증여에 관한 운영절차 강화, 별도 예산 마련
다자협력 주요 파트너 (Multilateral Partners)	• 세계은행(World Bank) – 양성평등과 성주류화, 어업 프로젝트(PROFISH), 에너지 프로젝트(ESMAP) • 세계아동보호기금(UNICEF) – 인력 파견, UNICEF에 관한 북유럽 국가들 활동에 참여 • 유엔여성기구(UN Women) – 양성평등, 여성폭력근절 기금 • 유엔대학(UNU) – 지열연수 프로그램, 어업연수 프로그램, 양성평등 연구와 연수프로그램 등

출처: 아이슬란드 국제개발협력 전략 2011–2014, 2013–2016, 저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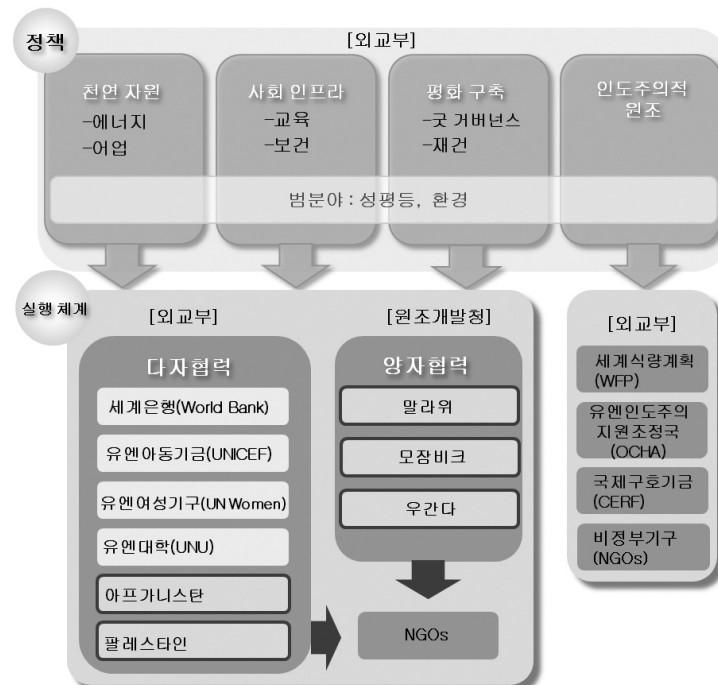
또한, 아이슬란드는 상기 두 문서에서 ‘성 평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아이슬란드 개발 협력을 위한 주요 이슈로 언급하고, 모든 개발협력 활동이 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성 평등 주류화를 위해 2013년 ICEIDA는 ‘성 평등 전략’을 별도로 수립하였으며, 성 평등 및 여성역량강화를 촉진 및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프로젝트, 펀드, 기관들을 지원할 것을 목표로 한다(MFA · ICEIDA, 2013). 대표적 사업으로는 2009년 MFA와 아이슬란드 대학의 협력으로 시작된 ‘UNU 성 평등 연구 및 연수프로그램(GEST)’에 관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환경 지속가능성 분야 추진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적응하고 완화하려는 개도국을 도와주기 위한 국제적 행동들에 참여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MDGs를 증진하기 위해 아이슬란드의 전문적인 기술을 활용할 것을 목표로 세웠다. 2011년 ICEIDA는 ‘환경 이슈에 관한 지도 원칙’이라는 환경 정책을 별도로 수립하였고, 1979년부터 시작된 ‘UNU 지열 연수프로그램(GTP)’와 ‘UNU 토지복구 연수 프로그램(LRT)’의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2. 개발협력 수행조직 및 운영

아이슬란드의 개발협력은 크게 MFA와 ICEIDA를 통해 수행된다. 이전 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아이슬란드 개발협력 전략은 2008년 개발협력 법률에서 명시한 목표, 가치, 원칙 등에 근거하여 수립되었다. 따라서, MFA와 ICEIDA는 ‘아이슬란드 개발협력 전략 2013-2016’에 따라 주요 분야를 천연자원, 사회인프라, 평화구축, 인도적 지원 등으로 설정하고, 주요 양자 파트너 협력국과 다자 파트너들과 함께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MFA와 ICEIDA 간 업무분담은 비교적 명확한 편이다(그림 3). MFA는 다자협력, 평화 안보 및 구축, 인도적 지원, 긴급구호 등 전반적인 협력 활동을 담당하며 아이슬란드 개발협력 수행에 대한 최고 권한을 갖는다. ICEIDA는 MFA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우간다, 말라위, 모잠비크 등 중점 협력국에서의 양자협력을 담당한다. NGO에 대한 자금 지원은 MFA와 ICEIDA의 공동 책임이며, 국가 내 분담 예산을 활용하고 있다(OECD, 2013).

〈그림 3〉 아이슬란드 외교부(MFA)와 원조개발청(ICEIDA) 간 업무 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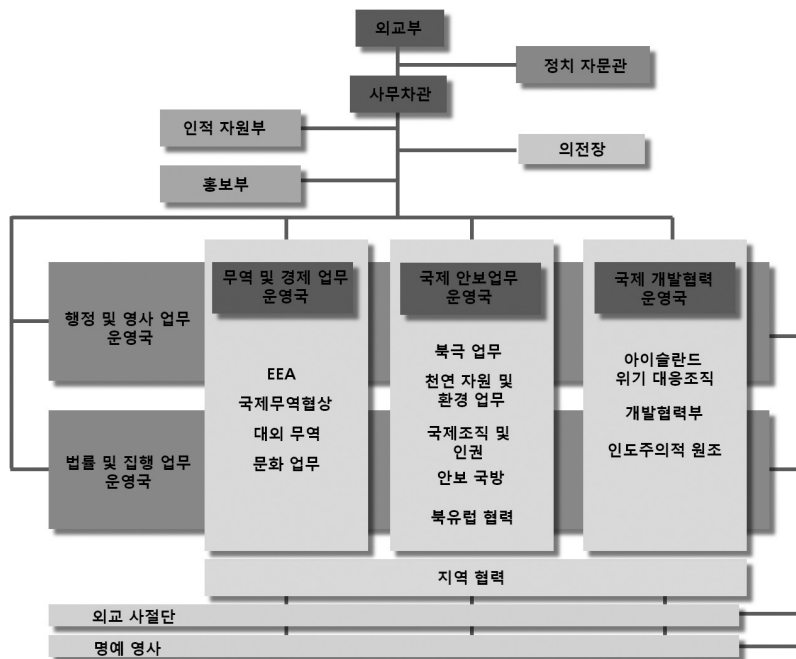


출처: 아이슬란드 개발협력 전략 2013-2016, 저자 재구성

2.1.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MFA의 개발협력 활동 전반은 국제개발협력 운영국(Directorat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에서 담당하고 있다(그림 4). 국제개발협력 운영국은 양자 원조, 다자 원조, 인도주의 원조, 긴급구호 기금 등 관련 정책 형성 및 조화를 담당하며, 세부적으로 개발협력부(Department of development cooperation)와 위기대응조직(Icelandic Crisis Response Unit)으로 나뉜다. 위기대응조직은 국제위기상황 발생시 아이슬란드의 국제적 참여 및 활동을 위해 2001년 설립된 조직으로서, 주로 다자기구에 대한 지원과 민간 전문가의 현장 파견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군대가 없기 때문에 민간 인력만이 파견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등에서 국제안보지원군(ISAF),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유엔여성기구(UN Women), 유엔아동보호기금(UNICEF),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HCA) 등의 주요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활동을 수행한다.

〈그림 4〉 외교부(MFA)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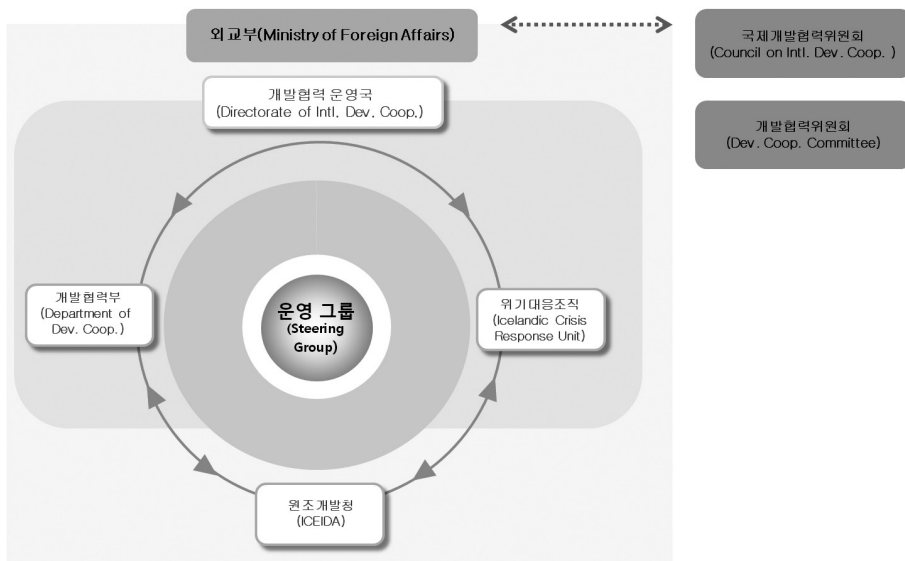


출처: MFA 홈페이지(<http://www.mfa.is/ministry/organization/>), 저자 재구성

또한, MFA 내에는 국제개발협력 운영국 이외에도 운영그룹(Steering Group)이 존재한다. 2009년 설립된 조직으로 MFA 사무차관이 운영그룹의 장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역할은 개발협력 수행에 있어 행정상의 문제를 논의하고, 전략 이슈 및 평가보고서를 검토하며, 개발협력의 관리 감독 및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운영그룹은 ICEIDA 내에 별도로 운영되던 이사회(Board of directors) 제도를 폐지하고 개발협력 정책 및 평가 검토를 위해 대체된 조직으로서 개발협력 기관의 책임성, 투명성 등 강화를 위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외에 아이슬란드 개발협력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을 위한 별도의 자문조직인 개발협력위원회(Development Cooperation Committee)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Council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가 있다. 개발협력위원회에는 국회에서 지명한 7명의 위원들이 있으며,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상기 개발협력위원회 7명과 NGOs, 학계, 사회파트너들로 구성된 총 17명 위원들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그림 5).

〈그림 5〉 아이슬란드 개발협력 운영체계



출처: 저자 구성

6) 아이슬란드 MFA 홈페이지, <http://www.mfa.is/ministry/personnel/ministry>, 검색일 : 2015. 08.10.

아이슬란드 MFA 조직 내 개발협력 전담인력의 비중은 크지 않다. MFA 홈페이지 상의 MFA 근무 직원은 행정 인력을 포함하여 총 127명⁶⁾이며, 특히 개발협력 활동 전반을 담당하는 개발협력 운영국 산하 조직 인원은 개발협력운영국(5명), 개발협력부(3명), 위기대응조직(2명)으로 총 10명 이내로 전체 인력의 약 8%를 차지한다.

2.2. 원조개발청(Icelandic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ICEIDA는 1981년 아이슬란드의 양자개발협력을 전담하기 위한 MFA 산하조직으로 설립되었다. 2008년 ICEIDA 법률(no. 43/2008)이라는 초기 조직에 관한 법률 이외에도, 2008년 개발협력 법률(no. 121/2008), 아이슬란드 개발협력 전략 2011-2014, 개발협력 이행에 관한 규정(no. 894/2009)에 따라 개발협력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ICEIDA 비전과 절차 2012-2014(Vision and Procedures of the Icelandic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를 수립하여 구체적 원조활동 계획을 담고 있다(ICEIDA, 2012).

ICEIDA의 사업수행 목표와 비전, 원칙들은 '2008년 개발협력 법률' 및 '아이슬란드 개발협력전략 2011-2014'에 명시한 개발협력 목표, 핵심가치와 일치하며, 이에 기반한 정책을 개발하고 수행한다. 또한, 2000년 UN 새천년 선언, 2002년 요하네스버그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선언, 2002년 몬테레이 선언, 2008년 도하 선언, 2008년 아크라 행동계획, 2011년 부산파트너십 합의문 등 그간 국제사회 내 주요한 국제적 합의들을 고려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진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ICEIDA, 2012).

예산 규모는 2013년 기준 아이슬란드의 전체 ODA 예산 중에 42.5%를 차지하며, 그 금액은 1,841백만 크로나(ISK)⁷⁾이다. 주요 협력 파트너로는 모잠비크, 우간다, 말라위 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이다. '아이슬란드 개발협력전략 2011-2014'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 중점협력 대상국은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모잠비크, 우간다, 말라위였고, 이외 니카라과와

7) 2013년 ICEIDA 연간보고서 통계 화폐단위가 크로나(ISK)로 되어있다. 2013년 세계은행 기준 평균환율이 1달러 당 122.18 크로나(ISK)임을 감안하여 ICEIDA의 달러 기준 ODA 규모를 예상할 수 있다.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PA.NUS.FCRF/countries/1W?display=default>, 검색일 : 2015.08.21.

스리랑카 등 일부 국가들에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었지만, 아이슬란드 금융 위기 여파로 인해 원조 예산이 삭감되어 중점협력국이 3개 국가로 축소되었다(ICEIDA, 2013).

ICEIDA는 'ICEIDA 비전과 절차 2012-2014' 문서에서, 주요 협력대상국 선정시 고려하는 기준을 빈곤, 인구, 개발원조, 평화, 거버넌스 등으로 제시하고 4년마다 개발협력 전략이 수립 될 때 이러한 관점들을 반영하여 국가들을 선정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ICEIDA, 2012).

〈표 4〉 파트너 국가 선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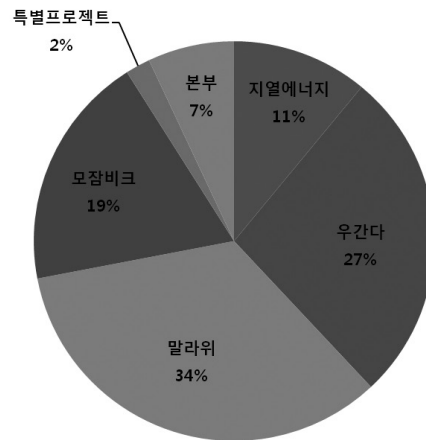
-
- 빈곤 : 아프리카와 최빈국에 초점을 둔다.
 - 인구 :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국가들에서 사업을 수행한다.
 - 개발원조 : 1인당 개발원조액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 또는 개발기관 운영이 적은 곳에서 사업을 수행한다.
 - 평화 : 평화가 구축되었으나, 특정하게 취약한 국가들에서 사업을 수행한다.
 - 거버넌스 : 거버넌스가 개선되고 있는 국가들에서 사업을 수행한다.
-

출처: '아이슬란드 ICEIDA 비전과 절차(2012)' 문서

2013년 ICEIDA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별 배분은 말라위에 632백만 크로나로 제일 많고, 우간다(488백만 크로나), 모잠비크(345백만 크로나) 순으로 지원되었다. 이외 지열에너지 지역협력에 대한 기여는 전체 예산의 11%인 204백만 크로나이며, 지열에너지 프로젝트인 노르딕 개발펀드(NDF)에 대해 62백만 크로나를 지원하였다. 기타 ICEIDA 본부 예산으로 138백만 크로나가 집행되었다(ICEIDA,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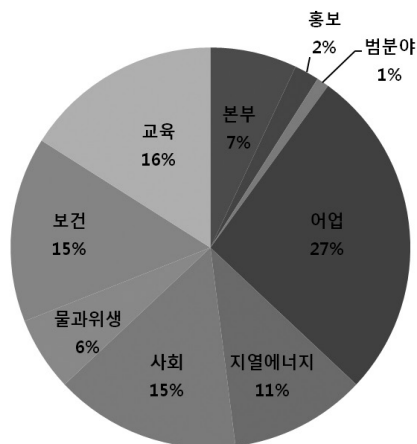
분야별 배분은 어업분야에 492백만 크로나(27%)가 지원되어 가장 많았고, 교육 분야가 2012년도에 비해 16%로 증가하여 305백만 크로나로 두 번째로 지원이 큰 분야였다. 사회 및 보건 분야에는 각각 전체 예산의 약 15% 정도 지원되었으며, 에너지(지열) 분야는 11%였다. 기타 물과 위생 분야(6%), 범분야(1%) 등이 있다(ICEIDA, 2013).

〈그림 6〉 2013년 원조개발청(ICEIDA) 지역별 배분



출처: ICEIDA 2013년 연간보고서

〈그림 7〉 2013년 원조개발청(ICEIDA) 분야별 배분



출처: ICEIDA 2013년 연간보고서

2013년 기준, ICEIDA에 근무하는 직원은 총 53명으로, 본부에 15명, 우간다에 16명, 모잠비크 10명, 말라위 12명이 근무하였다. ICEIDA는 본부와 현장간 업무 분담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 3개 중점협력국에 대한 사업 계획, 이행, 평가 등 전반적인 권한을 지역 사무소에 이

임하였다. 이에, 협력국 내 아이슬란드 해외 공관이 부재할 경우, ICEIDA 지역사무소장이 권한을 대행하기도 한다. 현장 중심의 사업 수행을 위해 각 지역별로 단기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인력을 보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ICEIDA, 2013).

ICEIDA는 수행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의 중점사항은 각 수행 단계별로 최초 계획을 잘 따르고 있는지, 목표 달성도와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등이다. 또한 ICEIDA의 운영 결과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다음의 지표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지표들은 원조효과성 측정을 위한 국제 선언인 파리선언과 부산글로벌파트너십에서 사용하는 모니터링 지표들과 연계성이 높다.

〈표 5〉 원조개발청(ICEIDA) 수행 점검 지표

지표	2009	2014 목표
M-1. 협력국의 국가 예산이 포함된 원조배분 비율	21%	85%
M-2. 협력국의 전략과 연계된 기술지원 비율	—	70%
M-3. 협력국의 공공재정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원조 배분 비율	2%	70%
M-4. 협력국의 국가조달시스템을 활용한 조달 비율	32%	70%
M-5. 협력국의 행정시스템 외에 설립된 중복시행부서(PIU)의 수	5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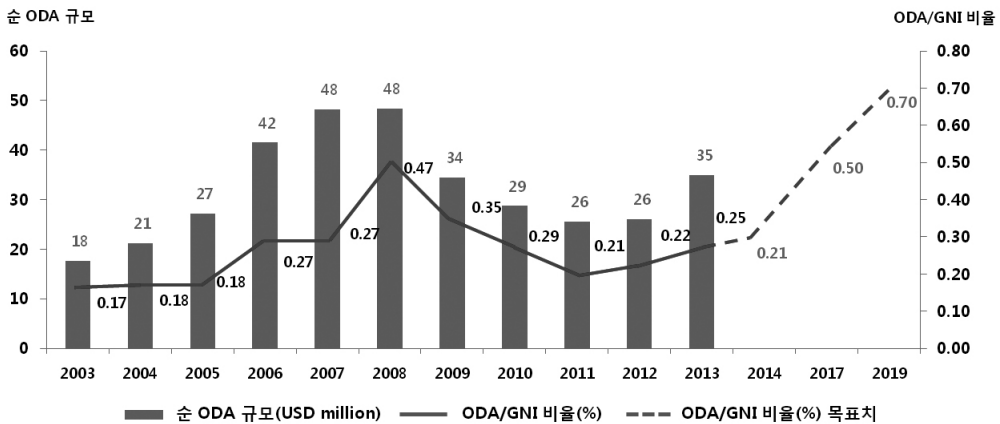
출처: '아이슬란드 ICEIDA 비전과 절차(2012)' 문서

IV. ODA 추진 현황

1. 규모 및 배분

아이슬란드는 소규모 공여국이지만, 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법적·전략적 프레임워크 하에 꾸준히 ODA 규모를 증가해 나가고 있다. <그림 8>에서 보면, 아이슬란드의 ODA는 2003년 1,800만 달러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여 2007-2008년에 4,800만 달러로 최고치에 이르렀다. 이후 아이슬란드 금융위기로 원조 규모가 축소되었다가 다시 2011년부터 회복세를 보여 2013년에는 그 규모가 총 3,500만 달러에 달하였다.

〈그림 8〉 최근 10년간 아이슬란드 순 ODA 규모와 GNI 대비 ODA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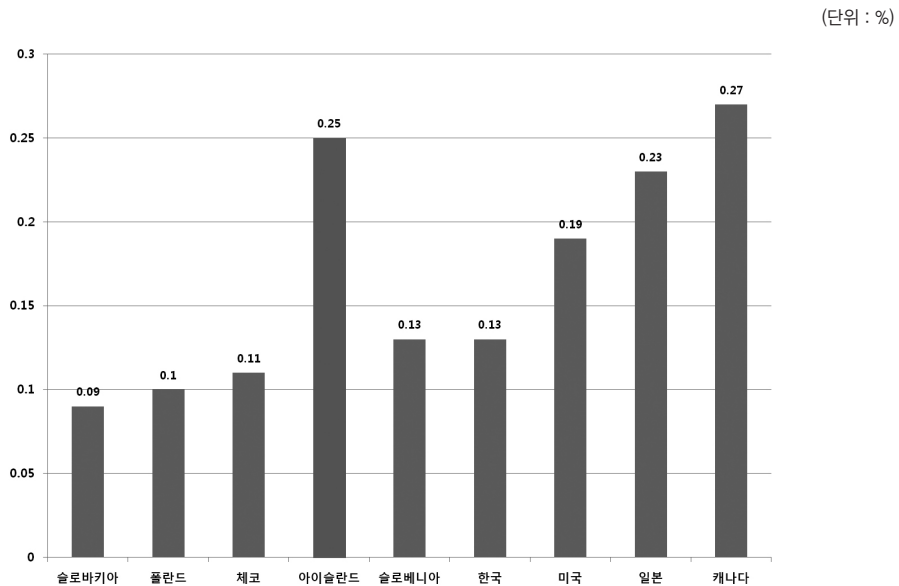


출처: <http://stats.oecd.org>, 검색일: 2015.08.13

또한, 2008년 개발협력 법률 및 주요 전략에 2019년까지 GNI 대비 ODA 비율 0.7%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03년에 이미 한국의 2013년 GNI 대비 ODA 비율인 0.13% 보다 높은 0.17%를 달성하였으며, 2013년에는 0.25%에 도달하였다. 이는 DAC 평균 비율인 0.40%에는 부족하지만, 동일한 해에 DAC에 가입하였던 체코(0.11%), 폴란드(0.1%), 슬로바키아(0.09%), 슬로베니아(0.13%)와 비교했을 때,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선진 공여국인 미국(0.19%), 일본(0.23%), 캐나다

(0.27%)와 비교해도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다(그림 9). 이러한 결과는 아이슬란드 주변 국인 북유럽 국가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2008년 경제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ODA 규모를 증가하여 원조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한 아이슬란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9〉 2013년 OECD DAC 신흥공여국 및 일부공여국의 ODA/GNI 비율



출처: <http://stats.oecd.org>, 검색일 : 2015.08.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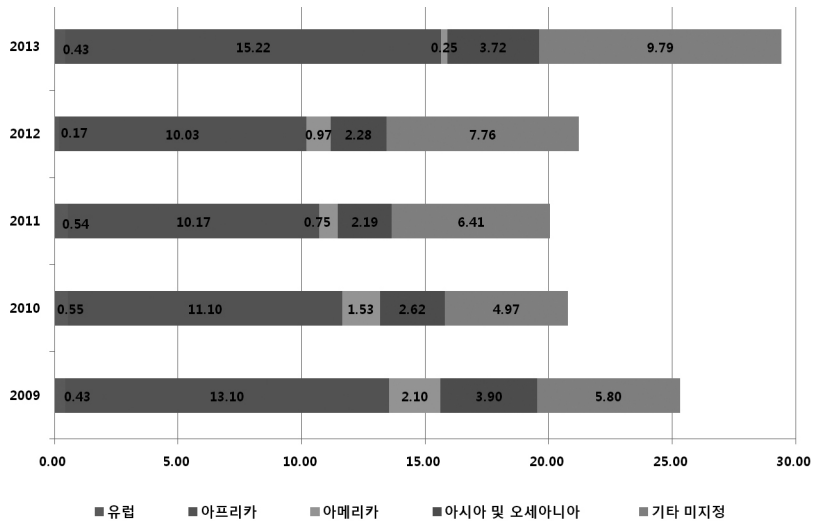
아이슬란드 원조의 지역별 배분에서 2013년 기준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은 지역은 아프리카이며 1,522만 달러(51.8%)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372만 달러(12.6%), 유럽 43만 달러(1.5%), 아메리카 25만 달러(0.9%) 순으로 지원되었다. 〈그림 10〉의 2009-2013년 5개년 실적을 살펴보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원이 매년 1순위의 비중을 차지하였음을 볼 수 있어, 아프리카와 최빈대륙국 중심의 지원 국가를 선정한다는 아이슬란드의 전략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 참조).

양자원조를 받은 상위 5개 수원국 리스트를 살펴보면, 2013년 기준 말라위 (566만 달러), 우간다(417만 달러), 모잠비크(288만 달러)로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팔레스타인(177만 달러), 아프가니스탄(75만 달러) 순으로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1).

〈그림 10〉 2009-2013년 아이슬란드 원조 지역별 배분 현황(순지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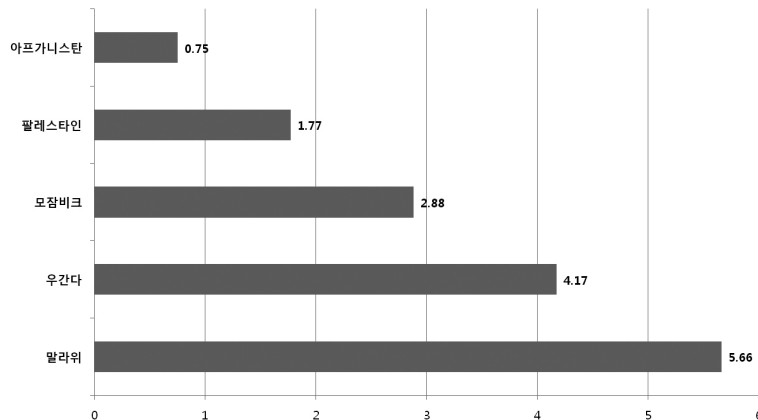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출처: <http://stats.oecd.org>, 검색일 : 2015.08.21

〈그림 11〉 2013년 아이슬란드 원조 상위 5개 수원국 현황(순지출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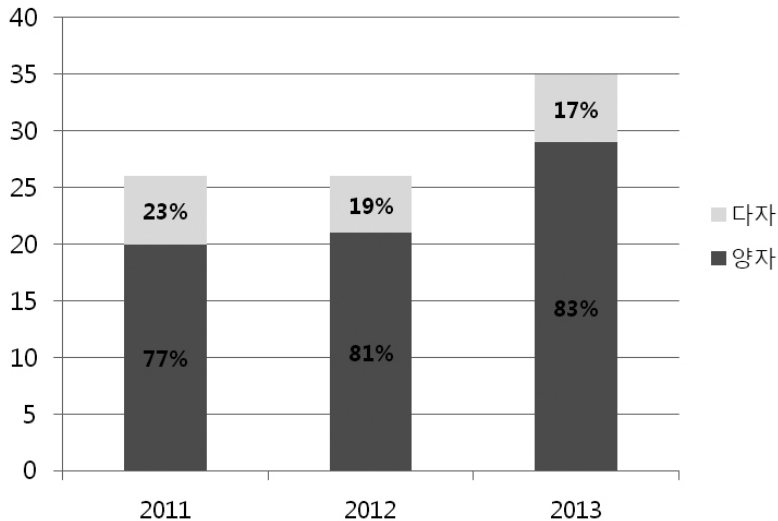
출처: <http://stats.oecd.org>, 검색일 : 2015.08.21

2. 유형(양자, 다자)

아이슬란드의 원조는 모두 무상원조로 지원되며, 유형별로는 양자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 내외로 2011년부터 매년 그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2011년 78%였던 양자원조의 비중이 2012년 81%, 2013년 83%로 소폭 상승하였다. 이는 2011년부터 양자원조 내 다자기구에 의해 실행되는 특정 프로젝트(Multi-bi, 비핵심기여 등)의 증가가 원인으로 보인다.

〈그림 12〉 2011-2013년 양자 및 다자원조 비율

(단위 : 백만 달러)



출처: <http://stats.oecd.org>, 검색일 : 2015.08.13

2013년에는 아이슬란드 전체 ODA 금액(순지출 기준) 3,500만 달러 중에 양자원조는 83%(2,900만 달러), 다자원조는 17%(600만 달러)로 지원되었다. 양자원조 내에서 지원 유형은 프로젝트가 46%로 가장 많았고, 양자 핵심 기여 및 기금 34%, 기술지원 10%, 행정비용 8%, 공여국내 비용(난민 지원, 개발인식증진 등) 2%의 순으로 비율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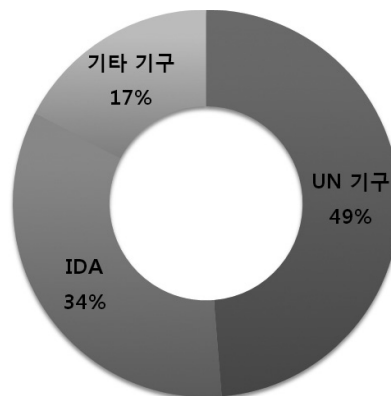
아이슬란드의 다자원조는 2011년 이후로 매년 전체 ODA의 2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OECD DAC에서 회원국들의 다자원조 비중에 대해서는 특별히 모범 사례 기준을 제시하

지는 않았지만, 2012년 DAC 국가들의 평균 다자원조 비율이 27%였던 것을 감안하면, 다자원조의 비중이 많지는 않다.

아이슬란드 다자원조의 주요 파트너는 세계은행 그룹과 유엔 기구이다. 2013년 기준 전체 다자원조를 많이 받은 대상은 UN 기구가 49%로 가장 많았고, 세계은행 그룹이 34%, 기타 기구들이 17%의 순이었다(그림 13). UN 기구 중에서는 유엔세계아동보호기금(UNICEF), 유엔여성기구(UN Women), 유엔대학(UNU) 등이 가장 많은 ODA를 지원 받았으며, 세계은행 그룹은 국제개발협회(IDA)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각 기관별 세부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4. 주요 파트너’ 부분에서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그림 13〉 2013년 다자원조 세부 배분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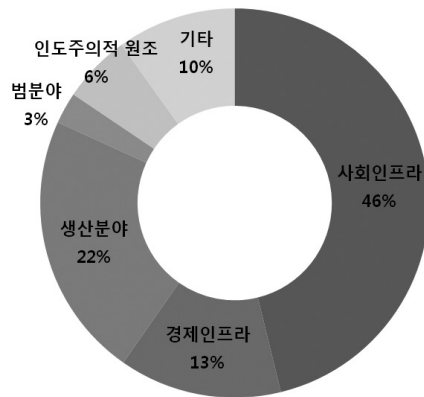
출처: <http://stats.oecd.org>, 검색일 : 2015.08.21

3. 분야

아이슬란드의 분야별 원조는 그들의 개발협력 전략과 상당 부분 일치하여 배분되고 있다. 아이슬란드 개발협력 전략 2013-2016'에 따르면, 아이슬란드의 주요 지원 분야를 천연자원(어업, 에너지), 사회인프라(교육, 보건), 평화구축, 인도적 원조로 구분하였는데, 2013년 기준 사회인프라가 4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생산분야 22%, 경제인프라 13%, 인도주의원조 6% 순으로 지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4).

〈그림 14〉 2013년 분야별 원조 배분 비율

(단위 : %)



출처: <http://stats.oecd.org>, 검색일 : 2015.08.14

세부 분야별 원조 규모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2013년 세부분야별 원조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주요 분야		금액	세부 분야 내 비중
사회인프라(46%)	교육	3.23	24%
	보건	2.85	21%
	인구 및 생식보건	0.23	2%
	물과 위생	0.98	7%
	정부 및 시민사회 지원	3.54	26%
	기타	2.76	20%
경제인프라(13%)	교통	—	—
	통신	—	—
	에너지	3.79	95%
	금융	0.2	5%
	기타	—	—

생산분야(22%)	농업, 어업, 임업	6.5	100%
	산업, 광업, 건축	—	—
	무역, 관광	—	—
범분야(3%)	범분야	0.77	100%
일반지원(0%)	일반지원	—	—
부채 연계 활동(0%)	부채 연계 활동	—	—
인도주의적 원조(6%)	긴급 구호	1.44	86%
	재난 방지	0.14	14%
기타(10%)	기타	2.91	100%
총계		29.41	100%

출처: <http://stats.oecd.org>, 검색일 : 2015.08.14

사회인프라에는 교육, 보건, 물과 위생, 정부와 시민사회 지원 등의 활동이 포함되는데, 이 중에서도 2013년 기준 정부와 시민사회 지원(354만 달러)가 가장 많았고, 교육(323만 달러), 보건(285만 달러) 등의 순서로 원조금액이 많았다. 정부와 시민사회 지원 활동은 평화안보와 분쟁해결 등의 활동을 포함하므로, 아이슬란드의 주요 분야인 평화구축 활동을 우선순위로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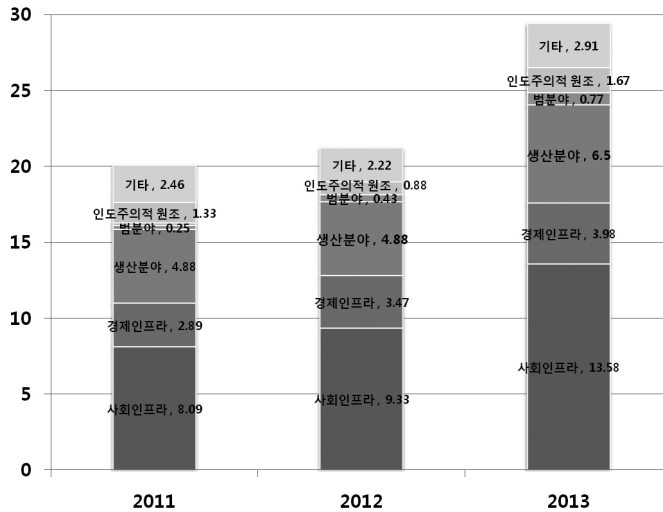
생산 분야는 어업, 임업, 산업, 광업, 무역, 관광 등의 주요 산업의 생산 활동을 말한다. 아이슬란드의 주요 산업은 어업이므로, 2013년 기준 생산분야 원조 금액 650만 달러 중에 어업 분야 활동이 580만 달러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경제인프라에는 교통, 통신, 에너지, 금융 등의 활동이 포함되는데, 이 분야 역시 아이슬란드 개발협력 전략상의 주요 분야인 에너지에 379만 달러, 금융에 20만 달러가 배분되어, 거의 대부분 에너지 분야에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2013년 연도별로 살펴보면, 분야별 배분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각 연도별 가장 많은 지원을 한 분야는 사회인프라 분야이며 매년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생산 분야, 경제인프라, 기타 미지정 활동, 인도주의적 원조 순으로 지원되었다.

〈그림 15〉 2011-2013년 분야별 원조 금액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출처: <http://stats.oecd.org>, 검색일 : 2015.08.14

4. 주요 파트너

4.1. 양자협력 파트너

아이슬란드의 양자협력은 ICEIDA에서 전담하고 있다. ICEIDA는 어업, 교육, 에너지, 보건, 물, 위생 분야와 관련하여 협력대상국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기존에 말라위, 우간다, 모잠비크,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니카라과 등을 대상으로 활동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점협력국을 DAC 수원국 리스트상의 최빈국이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인 말라위, 우간다, 모잠비크로 조정하여 ‘아프리카 지역 및 최빈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개선’이라는 아이슬란드의 원조 목표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중점협력국의 환경과 요구에 맞는 원조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전략보고서 (Country Strategy Paper)를 작성하는데, 현재 ‘말라위 전략보고서 2012-2016’과 ‘우간다 전략보고서 2014-2017’을 작성하여 ICEIDA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각 국별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4.1.1 말라위

말라위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이며, 아프리카 동남부에 위치해 있다. 말라위는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매년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2013의 전체 187개국 중 175위에 해당한다(UNDP, 2014). 아이슬란드는 1989년부터 말라위와의 협력을 시작하여, 세 개 중점국가 중 협력 역사가 가장 깊다. 지원 규모도 2013년 기준으로 ICEIDA 전체 예산(1,841백만 크로나) 중 34%(632백만 크로나)를 차지하여 세 개 중점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ICEIDA, 2013 : 40).

대부분의 지원은 말라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인 남부의 Mangochi구역에 집중되었다. 초기에는 주로 어업분야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으나, 2009년 Lake Malawi에서의 프로젝트가 종료되면서, 2010년부터는 어업에 종사하는 마을에 보건, 교육, 식수 등을 공급하는 기초서비스 개선을 중점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ICEIDA, 2013 : 13). 2011년에 수립된 말라위 전략보고서 2012-2014에 따르면 중점 지원 분야를 교육(기초교육, 성인교육), 보건, 위생(식수개선)으로 명시하고, 말라위 성장과 개발전략 2011-2016과 연계하여 수원국의 개발 우선순위를 고려한 원조활동을 수행하고 있다(ICEIDA, 2012).

특히, Mangochi 구역의 지방정부와 농촌개발부(MoLGRD)와 ICEIDA 간의 협력사업인 ‘Mangochi 구역 기초서비스 개선사업 2012-2016’을 통해, 동 구역의 행정역량 배양, 교통 및 통신 인프라 구축, 기술 지원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형(Program Based Approach)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4.1.2 우간다

우간다는 동아프리카 중부에 위치한 나라로서, 인간개발지수 2013의 187개국 중 164위를 차지하고 있다(UNDP, 2014). 2013년 기준, 우간에 대한 아이슬란드 지원 규모는 488백만 크로나로 전체 예산의 27%에 해당한다(ICEIDA, 2013 : 40). 아이슬란드와 우간다는 2000년부터 협력을 시작하였다. 우간다에서의 가장 큰 프로젝트는 Victoria 호수의 작은 섬에 위치한 Kalangala 지역에 대한 지원이다. 동 지역은 우간다에서 가장 생활하기 열악한 지역 중 하나인데, 협력의 주요 목표는 어업, 교육, 관광 분야의 개발전략을 이행하고, 동시에 지역 거버넌스를 개선하여 거주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아이슬란드는 2014년 ‘우간다 전략보고서 2014-2017’을 수립하였는데, Kalangala와 Buikwe 구역의 어업 공동체에 초점을 둘 것을 목표로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어류 포획, 어종 다양화, 어업 관련 고용 증가 등 어업공동체의 개선 뿐만 아니라 기초 보건, 교육 서비스 개선, 행정역량 강화 전반을 다루는 것이다. 이외에도 환경, 성 평등 등의 범분야에 대한 전략도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아이슬란드가 북유럽 개발기금(NDF), 세계은행과 추진중인 지열에너지 프로젝트와 관련된 협력에도 관여할 예정이다(ICEIDA, 2014).

4.1.3 모잠비크

모잠비크는 아프리카 동남쪽 해안에 위치한 나라로서, 인간개발지수 2013의 187개 국가 중 178위에 해당한다(UNDP, 2014). 2013년 지원규모로는 총 345백만 크로나로서, 아이슬란드 원조의 19%를 차지하였다(ICEIDA, 2013 : 40). 아이슬란드와 모잠비크의 협력은 1996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주요 지원 분야는 어업, 교육, 사회인프라 등에 관한 것이다. 특히, 2009년 모잠비크 어업에 대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모잠비크의 공동 프로젝트가 프로그램형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모잠비크 어업공동체에서 빈곤감소 및 식량안보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모잠비크의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인 Inhambance의 성인교육도 지원하였으며,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성 평등과 사회인프라 증진을 위하여 모잠비크 여성복지부를 지원하였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아이슬란드와 모잠비크의 적십자 간 협력하여 Maputo 지방의 7개 공동체에 보건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4.2 다자협력 파트너

아이슬란드의 다자협력 주요 파트너는 세계은행(World Bank Group),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여성기구(UN Women), 유엔대학교(UNU) 등으로 주로 UN기구들과의 협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난민기구(UNHCR), 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다른 기구들과의 협력도 지원하고 있다.⁸⁾

8) 아이슬란드 MFA 홈페이지, <http://www.mfa.is/foreign-policy/development-cooperation/icelandic-development-cooperation/multilateral-channels/>, 검색일 : 2015.08.20

4.2.1 세계은행(World Bank)

아이슬란드는 세계은행의 북유럽 발트해 선거구(Nortic-Baltic Constituency)⁹⁾의 일원으로서, 세계은행그룹의 재정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광범위한 조정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세계은행그룹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등으로 구분되는데, 아이슬란드는 이 중 국제개발협회에 대해 가장 활발히 지원하고 있으며, 0.23%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세계은행 홈페이지).

주요 지원분야로는 지열에너지, 어업, 성 평등 분야가 있다. 구체적으로 지열에너지 분야에서는 1983년에 세계은행과 13개 공여국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시작된 기술지원 프로젝트(Energy Sector Management Assistance Program, ESMAP)에 참여하고 있다. ESMAP은 빈곤감소와 경제성장을 위해 지속가능한 환경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에너지 분야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슬란드 지열전문가를 파견하여 개도국 내 세계은행 사업을 분석하고 계획하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2012년 1월, 아프리카 지속가능한 지열에너지에 관한 세계은행과의 협정(Compact with the World Bank Group on Sustainable Geothermal Energy for Africa)에 합류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열에너지 활용 지원을 위한 전략 수립과 교육 등의 활동에 협력하고 있다.¹⁰⁾

어업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어업관리 강화, 건강한 어류자원 보장 및 생산량 증가 등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 Global Program on Fisheries(PROFISH)를 2005년에 시작하였다.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1명의 전문가를 세계은행에 파견하였다. 성 평등 분야에서는 2007년에 시작한 Gender Action Plan(GAP)이라는 세계은행의 프로젝트에 합류하여, 여성의 경제 활동 증진을 목표로 한 여성 일자리, 토지 소유권, 재정 서비스 등의 접근 개선을 위한 활동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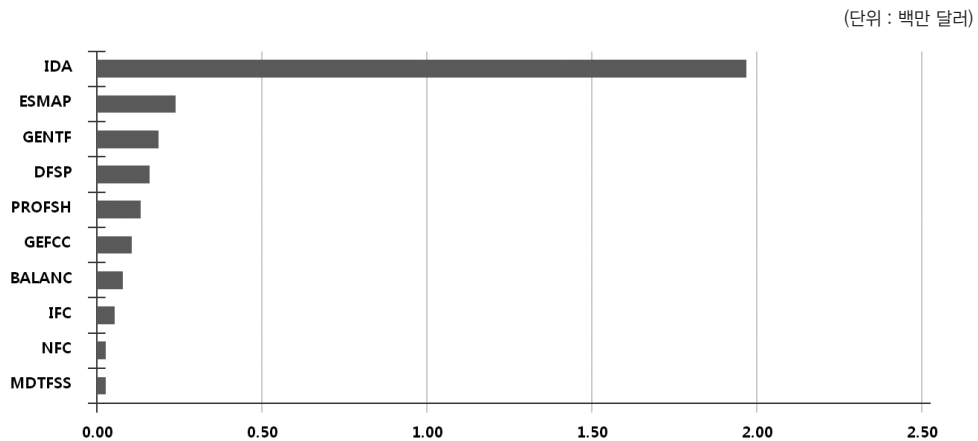
9) 북유럽 발트해 선거구(Nortic-Baltic Constituency)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모인 의사결정기구로서, 세계은행그룹의 관리와 기관 전략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http://www.worldbank.org/en/about/leadership/directors/eds20/overview#1>, 검색일 : 2015.08.18.

10) 아이슬란드 MFA 홈페이지, <http://www.mfa.is/foreign-policy/development-cooperation/icelandic-development-cooperation/multilateral-channels/the-world-bank/>, 검색일 : 2015.08.20.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은행 내 개별 기금과 사업들도 지원하고 은행 내 인권 지식 증진을 목표로 한 북유럽 신탁 기금(Nortic Trust Fund, NTF)에도 기여하고 있다.¹¹⁾

세계은행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평균 기여규모로 봤을 때, IDA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IDA가 저개발국에 대해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곳이라는 기관 성격을 고려한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상, 분야별 프로젝트로 봤을 때에는 에너지(ESMAP), 어업(PROFISH) 등으로 지원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6〉 지난 5년간 세계은행그룹에 대한 평균기여금액



출처: <http://www.aidflows.org/S.pdf>, 검색일 : 2015.08.18

4.2.2 유엔대학(UNU)¹²⁾

UNU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연구역량 구축 및 지식이전 등을 통해 국제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자 1973년 설립된 기관으로, 본부는 일본 도쿄에 있으며 전 세계의 13개국에 지속가능한

11) 세계은행 홈페이지, <http://web.worldbank.org/WBSITE/EXTERNAL/TOPICS/EXTGENDER/0,,contentMDK:21983335~pagePK:210058~piPK:210062~theSitePK:336868,00.html>, 검색일 : 2015.08.20.

12) 아이슬란드 MFA 홈페이지, <http://www.mfa.is/foreign-policy/development-cooperation/icelandic-development-cooperation/multilateral-channels/unu/>, 검색일 : 2015.08.20.

개발, 인권, 평화 이슈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OECD, 2013). 아이슬란드와는 4개의 UNU 연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열에너지, 어업, 토지복구, 성 평등 등 아이슬란드의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들이다. 개도국에서 온 실무자들에게 각 분야별 6개월 기간의 연수를 제공하고, 아이슬란드 대학에서 석·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UNU 지열 연수프로그램(GTP)은 1979년 시작된 역사가 오래된 프로그램으로 지역 잠재력이 있는 개도국으로 하여금 지열 탐구와 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UNU-GTP 프로그램은 2005년부터 정기적으로 개도국에서 워크숍을 열고 있으며, 현재까지 8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지열에너지활용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550명 이상이 6개월 연수를 수료하였다.

UNU 어업 연수프로그램(FTP)은 어업 분야 교육을 통한 역량 구축을 통해 어업에서의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이슬란드 해양연구기관(MATIS)이 주요 운영의 책임이 있으며, 아이슬란드 대학, Akureyri 대학, 기타 기업들과도 협력하고 있다. 주요 대상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군소도서국들이며, 현재까지 약 280명 이상이 6개월 연수를 수료하였다.

UNU 토지복구 프로그램(LRT)은 UNU, 아이슬란드 정부, 아이슬란드 농업대학, 토양보존 서비스 등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며, 토지악화, 토양침식, 사막화, 기후변화의 악영향으로부터 회복이 가능하도록 개도국 출신들의 전문가들을 교육하는 것이다.

UNU 성 평등 연구 및 연수 프로그램(GEST)은 2009년 MFA와 아이슬란드 대학의 협력으로 시작되었으며, 2013년 5월 UNU와 협력을 시작하였다. 개도국 출신 전문가들이 성 평등 분야에서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UNU 대학과 협력 이후로 총 29명이 현재까지 GEST를 완료하였다.

4.2.3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유엔여성기구(UN Women)

UNICEF에 대한 지원은 출자와 출연 모두를 포함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중동지역에 대한 활동의 일환으로 여성할례철폐를 목표로 한 UNICEF와 UNFPA의 공동 프로젝트를 지원하

였으며, UNICEF 말라위 사무소의 JPO 포지션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였다.¹³⁾ UN Women에 대한 지원은 주로 양성평등에 대한 UN 정책형성에 참여하는 것인데, 주요 형태로는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신용기금에 출연 및 출자, 아이슬란드 내 UN Women 국가위원회와 협력 및 UN Women에 관한 북유럽 연합활동에 참여, 유엔여성개발기금(UNIFEM) 및 UN Women 사무소에 전문가 파견 등이 있다.¹⁴⁾

13) 아이슬란드 MFA 홈페이지, <http://www.mfa.is/foreign-policy/development-cooperation/icelandic-development-cooperation/multilateral-channels/unicef/>, 검색일 : 2015.0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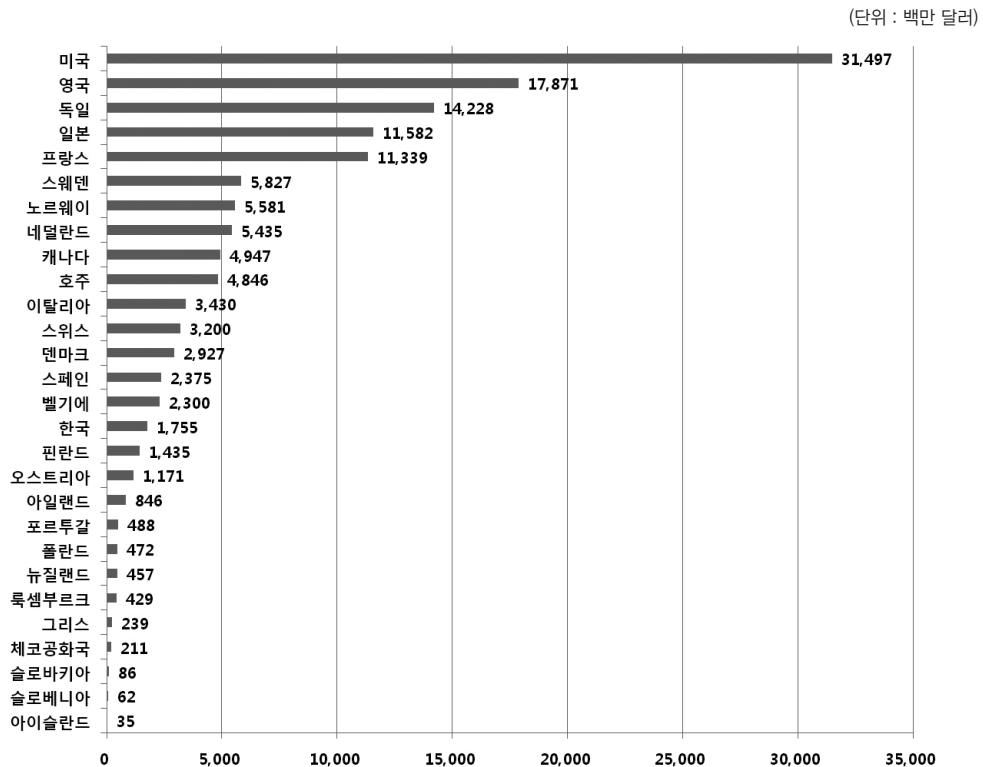
14) 아이슬란드 MFA 홈페이지, <http://www.mfa.is/foreign-policy/development-cooperation/icelandic-development-cooperation/multilateral-channels/un-women/>, 검색일 : 2015.08.20.

V. 결론

1. 요약

지금까지 살펴본 아이슬란드의 ODA 법적·전략적 체계 및 지원 현황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략적 측면을 살펴보면, 아이슬란드는 2013년 순 ODA 지원규모가 3,500만 달러에 달해 OECD DAC 28개 회원국 중 가장 지원 규모가 작은 공여국에 해당한다(그림 17). 그러나, 소규모 원조공여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슬란드 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법률(no.121/2008)과 자체 전략 수립(2011-2014 전략, 2013-2016 전략)을 통해, 비교적 탄탄한 법적·전략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ODA를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17〉 2013년 OECD DAC 회원국 순 ODA 규모



출처: <http://stats.oecd.org/>, 검색일 : 2015.08.18

아이슬란드는 자체 원조 전략 프레임워크 구축시 MDGs, 파리선언 등 국제적 선언과 공약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국제 개발협력의 동향을 반영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이슬란드 원조 목표는 최빈국의 빈곤감소와 삶의 질 개선인데, 이는 MDGs의 주요 목표인 절대적 빈곤감소를 이행하기 위한 중심축이 되고 있으며, 원조의 우선순위 분야도 사회인프라(교육, 보건) 개선, 환경 및 성 평등 주류화 등으로 MDGs의 주요 세부목표 분야와도 일치한다. 또한 UN에서 제시하고 있는 GNI 대비 ODA 0.7% 달성을 위해, 2008년 개발협력 법률과 주요 전략에 2019년까지 0.7% 달성 목표치를 언급하여, 작은 원조규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원조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이슬란드 ODA 추진 체계를 살펴보면, MFA에서 다자협력을 담당하고, ICEIDA에서 양자협력을 담당하는 이분화된 구조로 추진되고 있다. 다자와 양자 협력의 비율은 약 60 : 40으로 구분되며, 비교적 명확한 업무분담을 통해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서로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MFA 내에 정책 및 평가를 위한 운영 그룹(Steering Group)을 두어 MFA와 ICEIDA 간 의사소통 채널을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별도의 자문조직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Council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와 개발협력위원회(Development Cooperation Committee)를 두어 주요 정책사항 결정시 자문을 받는 등 서로간의 담당 업무 분담과 협력 체계가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

2013년 OECD DAC 특별 검토에 따르면, 아이슬란드의 전략 프레임워크가 우수하고 MFA와 ICEIDA 간 업무분담을 통해 개발협력 이행을 위한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양 기관 간 직원 및 전문가들의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전략 수립, 국별 프로그램 관리 등에 있어 양 기관의 역량을 최적화 할 수 있어야 하며, 변화하는 개발환경과 우선순위에 대해 각 기관의 이용가능한 기술들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또한 원조 수행을 위한 추가재원 마련을 위해 좀 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ODA 사업의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원조사업의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결과보고 체계를 좀 더 명확히 할 것을 제언한 바 있다(OECD, 2013).

2. 시사점

이전 장까지의 아이슬란드의 ODA 전략 및 추진 현황을 검토해봤을 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ODA 규모의 확대와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4년 GDP 기준 세계 194개국 중 13위를 차지한 세계 경제력 기준 상위 그룹에 속하며, 순 ODA 규모가 2014년 총 1,851백만 달러에 달해 28개 DAC 회원국 중 16위에 해당한다. GNI 대비 ODA 비율은 0.13% 정도로 DAC 회원국 평균인 0.4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아이슬란드는 2014년 GDP 기준 세계 194개국 중 114위를 차지하였고, 2014년 순 ODA 규모가 35백만 달러에 달해 DAC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원조 규모가 작은 공여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GNI 대비 ODA 비율은 0.21%로 우리나라의 1.6배 수준이며, 우리나라와 GDP 규모로 비교했을 때 8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준을 ODA로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7). 아이슬란드가 원조 규모 확대 및 품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 외교 전략과 개발협력 전략 간 연계성이 높으며, 국제적 선언 및 공약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높이하고자 한 아이슬란드 정부의 강한 의지가 큰 동력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원조 규모 확대를 통한 국제사회의 기여도 제고를 위해 2010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수립하고, 2015년까지 GNI 대비 ODA 비율을 0.25%까지 증가할 계획을 발

〈표 7〉 한국과 아이슬란드의 경제력 순위 및 ODA 규모 비교

국가	2014년 GDP 순위(규모) ¹⁵⁾	순 ODA 규모 순위(금액) ¹⁶⁾	ODA/GNI 비율
한국	13위(1,410,383백만 달러)	16위(1,851백만 달러)	0.13%
아이슬란드	114위(17,071백만 달러)	28위(35백만 달러)	0.21%

출처: 세계은행 통계사이트(<http://databank.worldbank.org/data/download/GDP.pdf>), OECD 통계사이트(<http://stats.oecd.org>)

15) 세계은행 통계사이트의 2014년 GDP 규모 순위에 따른 것이며, 총 194개국에 대한 순위이다.

16) OECD 통계사이트의 DAC 회원국에 대한 2014년 순 ODA 금액에 따른 것이며, 잠정치이다.

표한 바 있으나, 2014년 실적이 0.13%인 것을 고려할 때,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슬란드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의 경제규모에 맞는 ODA 규모의 점진적 확대 및 질 제고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ODA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과 각자의 담당 업무를 조정·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이슬란드는 MFA에서 ODA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각 ODA 추진 전략과 주요 사항 결정 시 국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또한 MFA에서 다자협력 전반을, ICEIDA에서 양자협력 전반을 담당하여 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가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고 서로간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아이슬란드 ICEIDA 내의 별도로 존재하던 이 사회의 기능을 없애고, 사업 수행에 있어 ICEIDA 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이 좀 더 확대된 반면, MFA의 ODA 총괄 관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MFA 내 운영 그룹을 신설하여 전략 수립 및 평가 시 MFA와 ICEIDA 간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도 아이슬란드 사례를 참고하여, 개발협력을 담당하는 부처 및 시행기관 간 보다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해 원조 중복을 피하고, 서로간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 면 보다 효과적인 원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아이슬란드 ICEIDA는 수원국 환경을 고려한 개발협력 사업 개발과 현지 필요사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현지 사무소를 통한 집행과 운영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다. ICEIDA의 지역사무소는 중점협력국인 말라위, 우간다, 모잠비크에 설치되어 있는데, 2013년 기준 총 53명의 직원 중 본부의 15여명 이내의 인원 이외에는 지역사무소로 인력을 배치하여 현장화를 강화하고 있으며, 현지사무소 내에 단기 컨설턴트를 채용하여 전문성을 보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이행방안’을 통해 현장 중심 사업 수행을 강조하고, KOICA도 내부적으로 ‘현장화 추진방안 로드맵¹⁷⁾’을 수립하여 현장중심의 사업 운영을 통한 원조효과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화 초기 계획 수립 이후, 사무소장 권한 확대, 현지직원 확대, 본부-사무소간 업무분장 수립 등 현장화 기반을 마련하고 일부 제도를 구축하였음에도, 아직 완전한 정착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현장화에 따른 프로젝트 사업 수행제도 개선, 사무소 인력 및 인프라 보강 등 보다 신속한 사업 수행과 현지 요구에 맞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7) KOICA 내부문서(2014). 현장화 수정 로드맵(3단계 이행계획)

마지막으로 아이슬란드는 중점분야인 어업, 에너지, 사회 인프라, 인도적지원 등에 대해 타 원조기관 및 다자기구와 공동으로 프로그램형 사업이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너지를 내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UNU와 협력하여 아이슬란드의 비교우위분야인 어업, 지열 에너지, 성 평등에 대한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매년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생들을 배출하고 있다. KOICA는 2014년 ‘타 원조기관과의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¹⁸⁾을 수립하고,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공여국 뿐만 아니라 브라질, 칠레, 터키, 태국 등 신흥공여국들과도 MOU를 체결하여 공동 협력을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향후 아이슬란드와도 공동 협력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특별히 아이슬란드와 한국의 각 비교 우위 분야에 대한 공동 연수 프로그램 또는 UNU를 비롯한 국제기관들과 삼각협력을 통한 상호 기술협력으로 서로 간의 시너지 제고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8) KOICA 내부자료(2014). 타 원조기관과의 공동협력사업 가이드라인.

참고문헌

〈국문자료〉

두산백과, 북극이사회 용어,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18943&cid=40942&categoryId=34516>

외교부(2009), 스웨덴 개황.

제 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0),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한국경제(2015.03.14). “EU 가입않겠다. 아이슬란드, 공식선언”. 검색일 :2015.08.23.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31337911>

KOICA(2008),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한울, 한국국제협력단.

KOICA(2014), KOICA 현장화 수정 로드맵(3단계 이행계획), 내부분서.

KOICA(2014), 타 원조기관과의 공동협력사업 가이드라인, 내부분서.

〈영문자료〉

Government of Iceland(1981), Act on Iceland'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ct No. 121/2008).

Guðjón Önn Sigurðsson(2012), The Development of Icelandic Foreign Policy from National Interest to Idealism, Reykjavik.

Gunmndur Fridrik Magnusson(2011), Changes in the Foreign Policy of Iceland after the Financial System Collapse in 2008, Aalborg University.

Icelandic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http://www.iceida.is/english>

ICEIDA(2012), Vision and Procedures 2012–2014, The Icelandic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 Reykjavik.

ICEIDA(2013), ICEIDA Annual report 2013, The Icelandic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 Reykjavik.

ICEIDA(2014), Uganda Country Strategy Paper 2014–2017, The Icelandic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 Reykjavik.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Iceland, <http://www.mfa.is/foreign-polic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Iceland(2011), Strategy for Iceland’s Development Cooperation, 2011–2014.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Iceland(2013), Strategy for Iceland’s Development Cooperation, 2013–2016.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celandic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2013), Gender Equality in Iceland’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ECD(2012), DAC Peer review of Korea, OECD, Paris.

OECD(2013), Special review of Iceland, OECD, Paris.

OECD(2014), “Iceland”, in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4 : Mobilising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ECD Publishing, Paris.

The World Fact Book, Iceland,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ic.html>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2014), Human Development Report 2014, UNDP : New York.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Iceland>

World Bank, <http://www.aidflows.org/IS.pdf>

[부록 1] 아이슬란드 개발협력 법률(국·영문)

2008 No. 121 9월 17일

아이슬란드 국제 개발 협력에 관한 법률

2008년 10월 1일 발효, 2008년 10월 23일 부로 발효된 법률 No.126/2008로 수정됨.

제 1조 일반조항

- 현재 이 법률은 아이슬란드 국제 개발 협력에 관한 법들을 규정한다.
- 아이슬란드의 국제 개발 협력은 UN헌장 및 아이슬란드 정부가 따르기로 약속한 다른 개발협력 관련 국제 협약들에 기반해야 한다.
- 아이슬란드 국제 개발 협력의 주요 목적은 ① 빈곤과 기아를 근절하고, ② 인권, 교육, 개선된 보건, 양성평등,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포함한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개도국 내 정부들의 노력을 지원한다.

제 2조 아이슬란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최고권위

- 아이슬란드 국제 개발 협력의 최고 권위는 외교부에 귀속된다.
- 국제 개발 협력은 재무부에 의한 의회 연간 예산 지출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다.
- [국회는 개발협력위원회 내 4년 임기의 11명의 대표자, 3명의 대리인을 선출한다.] 개발협력위원회는 장기 국제 개발 협력 관련 정책 토론과 장관의 결정에 의회 정당 대표자들이 참가하는 것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 3조, 제 4조를 참고하십시오.

제 3조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 장관은 2년 마다 4개년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부 사업에 관련한 의회 결의안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은 모든 국제 개발 협력 관련 기여들과 그것들이 아이슬란드 장단기 정책 목표 사이에서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를 다루고 있어야 한다. 또한, 사업은 장관이 그 목표들을 어떻게 달성할지에 관한 포괄적인 검토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그 중에서도, ODA에 할당하기로 계획 된 GNI 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 의회 결의안에 관한 제안서(1절을 참고하십시오) 초안은 개발협력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고, 위원회의 진술은 제안서가 의회에 제출될 때 함께 첨부되어야 한다.

제 4조 국제개발협력 관련 위원회

- 장관은 4년 임기의 17명의 회원과 동일한 수의 대리인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의회에 임명한다. 의회의 의장은 지명 없이 임명된다. 개발협력위원회의 대표자들은 의회의 회원 역할을 맡으며, 더 나아가 9명의 회원들이 다음에 따라 추가로 지명될 수 있다.
 - a. 국제 인도주의 지원 및 개발협력에 참여한 아이슬란드 비정부기관의 파트너단체와 협력하는 다섯 명
 - b. 대학 수준의 교육을 위한 위원회와 협력하는 두 명
 - c. 사회적 파트너와 협력하는 두 명
- 의회는 ① 국제개발협력 사업 관련, ② 개발협력에 대한 할당량 및 그것들이 어떻게 다자/양자 협력으로 나뉘는지, ③ 다자기구 업무에 대한 아이슬란드의 참여 및 협력국 선택 등과 관련한 개발협력 우선순위 등의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자문역할을 할 수 있다.
- 위원회는 1년에 최소 두 번 만나야 한다.
- 장관은 규제 체계 내에서, 의회에 임명하는 역할에 관련한 상세한 조항들을 규정할 수 있다.

제 5조 다자 개발 협력

외교부는 국제 개발 협력에 관한 정부사업에 의하여, 국제기구 및 국내외 비정부기구들과 협력하여 아이슬란드 다자 개발 협력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제 3조를 참고하십시오.

제 6조 아이슬란드 원조개발청

- 아이슬란드 원조개발청(ICEIDA)은 외교부 산하 별도 기관이다.
- ICEIDA는 국제 개발 협력에 관한 정부 사업에 의거하여 장관에 의해 지시 받거나, 외교부에 의해 추가로 결정된 아이슬란드의 양자개발협력을 책임진다.
- 장관은 아이슬란드 외교업무 관련 법률 No. 39/1971이나 외교부 장관의 직접적인 지시의 영향으로나, 혹은 일반 외교업무 관련하여 대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ICEIDA 국별 사무소(Country offices)를 대사관으로 운영시킬 수 있으며, ICEIDA 국별 사무소장(Country Director)은 그들의 의무와 함께 대사 직무 대행자로 임시 임명될 수 있다.

- 장관은 ICEIDA의 청장(Director General)을 임명할 수 있고, 그의 권한을 규정할 수 있다. 청장은 학위를 소유하고, 개발청 운영과 관련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나 그녀는 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제 개발 협력과 관련한 외교부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청장은 개발청 운영 및 일상적인 과업에 책임이 있다. 그나 그녀는 원조개발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 장관은 개발협력관련 ICEIDA 국별 사무소의 역할, 외교관계, 아이슬란드 국익 보호뿐만 아니라 ICEIDA의 역할, 외교부와의 관계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제 7조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정부직원들

- ICEIDA는 해외 특정 개발 협력 사업을 위해 근무할 인력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계약직으로 고용할 권한이 있다. ICEIDA는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일찍 종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 혹은 직원이 현지 사정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3개월의 통보와 함께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 외교부는 ICEIDA와 협력하여 한번에 5년이 넘지 않는 계약의 ICEIDA 직원을 고용할 권한이 있다. 해당 직원의 근무 기간 동안, 그 직원은 ICEIDA로부터 무급휴가 중인 외교부 직원으로 간주된다. 이 고용의 경우, 법률 No. 70/1996의 제 7조의 조항은 무시된다. 마찬가지로 외교부 공무원이나 직원들도 ICEIDA에 고용될 수 있다.
- 해외에 파견되거나 개발협력에 참가한 정부직원들은 아이슬란드가 약속하거나 법적 의무를 수반한 국제법 상 모든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그들은 상사로부터 혹은 일의 특성상 주어진 협약, 법, 지도에 따라서 업무와 관련하여 알고 있는 것들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보안 의무는 고용이 끝난 후에도 효력이 유지된다. 그들은 파견된 국가 내의 정치적 활동이나 시위에 참여할 수 없다.

제 8조 이행, 모니터링, 그리고 평가

- 개발 협력의 이행은 OECD DAC와 같은 국제 커뮤니티의 우수 사례 절차, 규칙, 가이드 라인을 따라야 하며, 개발협력 분야 기금의 관리와 보호 관련해서 아이슬란드 국가 감사 사무소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국제 개발 협력 사업의 이행은 외부기관의 정기 모니터링과 평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제 9조 외교부 장관에 의한 보고 및 의회에 공표

- 제 3조에 의거하여, 장관은 격년에 한번씩 의회에게 의회 결의안 제안서와 함께, 국제 개발 협력 사업의 이행과 관련한 보고를 해야 한다.
- 1항에 덧붙여, 장관은 외교위원회와 총예산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국제 개발 협력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한다.

제 10조 발효 및 법률 분쟁

본 법률은 즉시 발효된다.

경과규정

- I. 이미 해외에서 근무중인 ICEIDA 직원은 법률 No. 43/1981 제 7조에 의하여, 해외근무기간 끝날 때까지 현재 고용계약에 따라 현재 직원들의 혜택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 II. 발효 중인 조항에도 불구하고, ICEIDA 이사회는 1981년 5월, 법률 No.43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유지할 수 있다.

Act on Iceland'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No. 121/2008

Entered into force on 1 October 2008. Amended with Act No. 126/2008 that entered into force on 23 October 2008.

■ Article 1. General Provisions.

- The present Act lays down rules for Iceland'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Iceland'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hall be based o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development cooperation that the Icelandic Government has undertaken to comply with.
- The main objectives of Iceland'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re to support the efforts made by Governments in developing countries to eradicate poverty and hunger and to promot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cluding human rights, education, improved health, gender equality,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sustainable use of resources. These objectives also extend to ensuring security at the international level, e.g. by promoting and preserving peace, peacebuilding and peacekeeping, and by providing humanitarian aid and emergency relief where needed.

■ Article 2. Supreme Authority for Iceland'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Supreme authority for Iceland'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s vested in the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s funded by the State Treasury through the Althingi's annual budget appropriations.
- [The Althingi elects seven representatives and seven substitutes to the Development Cooperation Committee for a four-year term]. The role of the Development Cooperation Committee is to ensure the involvement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parliamentary parties in policy debate and the Minister's decisions on long-term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f. Articles 3 and 4.

■ Article 3. Programme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Every two years the Minister shall submit a proposal for a parliamentary resolution concerning the Icelandic Government's Programme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or a four-year period.

- The Programme shall cover all contributions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how they are divided between Iceland's long- and short-term policy objectives. Furthermore, the Programme shall include a comprehensive overview of how the Minister intends to achieve its goals.
- The Programme shall, inter alia, specify the percentage of the Gross National Income that is planned to be allocated to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 A draft proposal for a parliamentary resolution, cf. paragraph 1, shall be submitted to the Development Cooperation Committee and the Committee's deposition shall be attached to the proposal when presented to the Althingi.

■ **Article 4. Council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The Minister appoints 17 members to a Council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or four-year periods and an equal number of substitutes. The Chairperson of the Council is appointed without nomination. The representatives on the Development Cooperation Committee shall serve as members of the Council and a further nine members shall be appointed as follows:
 - a. five in consultation with the partnership group of Icelandic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involved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aid and development cooperation,
 - b. two in consultation with the cooperation committee for university level education,
 - c. two in consultation with the social partners.
- The Council shall act in an advisory capacity in matters of policy making, for example as regards the Programme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f. Article 3, allocations to development cooperation and how they should be divided between multilateral and bilateral cooperation, and as regards prioritisation in development cooperation, including Iceland's participation in the work of multilateral organisations and the choice of partner countries.
- The Council shall meet at least twice a year.
- The Minister may lay down, in the framework of a regulation, more detailed provisions as regards the role assigned to the Council.

■ **Article 5. Mult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

- The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is responsible for Iceland's mult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nd national and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s appropriate, pursuant to the Government's Programme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f. Article 3.

■ **Article 6. The Icelandic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 The Icelandic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ICEIDA, is a separate agency under the authority of the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 ICEIDA is responsible for Iceland's b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 as mandated by the Minister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s Programme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f. Article 3, and as further determined by the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 The Minister may determine that ICEIDA's country offices shall be operated as embassies and may temporarily appoint ICEIDA Country Directors as chargé d'affaires ad interim, in addition to their duties as Country Directors, pursuant to Act No. 39/1971 on the Icelandic Foreign Service and subject to direct orders from the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and the Ambassador concerned, as applicable, in respect of regular Foreign Service assignments .
- The Minister appoints the Director General of ICEIDA and lays down his/her terms of reference. The Director General shall hold a university degree and possess knowledge relevant to the field of operation of the Agency. He/she shall participate in the functions of the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concern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s determined by the Minister. The Director General is responsible for the daily operations and running of the Agency. He/she employs the Agency's personnel.
- The Minister lays down in regulation further rules regarding the role of ICEIDA and its relation to the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as well as the role of ICEIDA country offices in development cooperation, foreign relations and the protection of Icelandic national interests.

■ **Article 7. Government Employees Involved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ICEIDA is authorised to employ personnel on a temporary basis to work on specific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abroad, for periods not exceeding five years at a time. ICEIDA may terminate any such employment contract with a notice of three months should the project be terminated or halted earlier than anticipated, or if the employee is unable to carry out his/her work due to circumstances in the host country.
- The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is authorised, in consultation with ICEIDA, to employ ICEIDA personnel temporarily for periods not exceeding five years at a time. During his/her period of service, the employee is regarded as an employee of the Ministry on unpaid leave of absence from ICEIDA. In case of such employment,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f Act No. 70/1996 may be derogated from. Equally, an official or an employee of the Ministry may be employed by ICEIDA.
- Government employees posted abroad and engaged in development cooperation shall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 honour all rules of international law that Iceland has committed to and entail legal obligations. They shall maintain confidentiality in regard to matters brought to their knowledge in the course of their work that must be kept confidential pursuant to agreements, laws and instructions given by their senior officers or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case. The obligation of confidentiality shall remain in force after the employment ceases. They are not permitted to participate in any political activities or protests in the country where they are posted.

■ **Article 8.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The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shall follow best practice procedures, rules and guidelin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uch as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of the OECD, and the requirements set by the Icelandic National Audit Office regarding the treatment and custody of funds in the field of development cooperati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me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f. Article 3, shall be subject to regular monitoring and evaluations by external entities.

■ **Article 9. Reports by the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and Disclosure to the Althingi.**

- Every other year, in conjunction with the proposal for a parliamentary resolution pursuant to Article 3, the Minister shall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me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o the Althingi.
- In addition to the provision in paragraph 1, the Minister shall report regularly to the Foreign Affairs Committee and the General Budget Committee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Article 10. Entry Into Force and Conflict of Laws.**

The present Act enters into force immediately.

□ . . .

Transitional Provision.

- I. Those employees of ICEIDA, who are already working abroad, shall have the right to retain their current employee benefits pursuant to Article 7 of Act No. 43/1981, until the end of their term abroad, pursuant to their current contract of employment.
- II.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 on entry into force, the ICEIDA Board of Directors shall retain its mandate pursuant to Act No. 43 of 23 May 1981 until 1 November 2008

아이슬란드 국제개발협력 이행에 관한 규정

No. 894/2009

제 1조 중앙행정

최종적으로 외교부 장관에게 아이슬란드 국제개발협력의 책임이 있다.
(아이슬란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법률 No. 121/2008 제 2조 1항을 참조하십시오.)

제 2조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의회와 개발협력위원회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의회는 법률 No. 121/2008 제 4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운영된다. 의회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외교부와 협의하여 안건을 결정한다. 의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외교부와 아이슬란드 원조개발청 대표자들도 회의에 참석한다. 회의록은 의회 회의의 내용을 담는다.

개발협력위원회는 법률 No. 121/2008 제 2조 3절에 정해진 바에 따라 운영된다. 이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부 사업의 의회 결의 초안에 대해 국회에 의견을 제시한다. (법률 No. 121/2008 제 3조 4항을 참조하십시오.) 위원회 회원들은 본 조항 1항에 언급된 국제개발 협력을 위한 위원회의 회원이 된다. (법률 No. 121/2008 제 4조 1항을 참조하십시오.)

제 3조 아이슬란드 원조개발청 (ICEIDA)

아이슬란드 원조개발청은 법률 No. 121/2008에서 규정되어있듯이, 그 법률의 목적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한다. (해당 법률의 제 1조를 참조하십시오.)

본 청의 활동과 사업에 관한 비용들을 재무부가 지불한다.

본 청은 외교부의 지시 하에 있으며, 법률 No. 121/2008 제 6조를 근간으로 운영된다.

제 4조 ICEIDA의 역할

원조개발청의 주요 임무들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개발 프로그램에 따른 아이슬란드 양자개발협력. (법률 No. 121/2008 제 3조를 참조하십시오.)
2. 외교부 장관이 원조개발청에 맡긴 개발협력 분야의 국제 위원회들 및 기구들의 활동에 참여.
3. 장관의 국회보고를 포함하여, 외교부를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마련하고 보고.

4.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과 이해의 증대를 목표로, 개도국 이슈와 개발협력에 관한 대중 교육 활동 시행. 대중 교육 활동은 외교부와 협의하여 마련한 연간 홍보 계획에 의거하여 이행될 것이다.
5. 법, 행정조항, 장관의 결정 등 각각의 경우에 의해 원조개발청에 맡겨진 다른 사업들

제 5조 개발협력의 이행

개발협력은 장관에 의해 승인된 양자/다자 개발협력을 위한 조정된 절차들에 따라 구성되고 이행된다.

운영감시, 다루지는 전문적인 이슈들,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의무들과 관련하여 사무차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부부처 내 개발협력을 위한 특별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 운영위원회는 정부 부처의 개발협력관련 부서의 부서장들, ICEIDA 청장, 그리고 추후 위원회 회장역할을 할 사무차관으로 구성된다.

개발협력의 수행에 있어서, ICEIDA는 ① 국제적 협력에 참여하고, ② 타 개발원조 공여자와 협력하며, ③ 이것의 이행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 보고 및 준비를 다룬다. 본 청은 아웃소싱 사업에 대한 계약뿐만 아니라, NGO 및 타 개발원조 공여자들과의 협력 협약을 마무리한다. 그러한 계약들을 마무리 할 때,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제 6조 ICEIDA 청장

장관은 법률 No. 121/2008 제 6조 4항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청장을 임명하며 청장에게 공적인 직무개요를 제공한다.

청장은 장관이 정한 외교부 개발협력업무에 참석하고 개발협력관련 특별운영위원회의 회원이 된다. (본 규정의 제 5조 2항을 참조하시오)

청장은 ①매일의 이행 및 원조개발청 운영과 ②그 운영이 아이슬란드의 국제적 공약에서 기인한 요구들뿐만 아니라 법이나 행정적 조항들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에 책임이 있다.

청장은 원조개발청 내부 조직을 결정할 수 있다.

한편, 공무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법률 No. 70/1996은 업무성격상 발생하는 특별한 다른 규칙들을 포함하여 청장 및 청장의 업무에 적용된다.

제 7조 ICEIDA의 직원들

원조개발청장은 본 청의 직원을 고용한다; 본 청은 직원 고용 시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될 참고문서를 마련한다.

원조개발청장은 청 내 직원들이 임시로 외교부를 위한 다른 일에 착수할 수 있도록 무급휴가를 허락한다. 유사하게, 외교부의 직원들 역시 임시로 원조개발청의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무급휴가가 허락된다. 본 절에 언급된 고용은 최대 5년간 지속되며, 고용을 알릴 의무는 면제된다. (법률 No. 121/2008 제 7조 2항을 참조하시오.)

제 8조 해외 사업과 관련한 임시직 고용

특정 해외 개발 사업 업무를 위한 임시직 고용은 법률 No. 121/2008 제 7조의 영향을 받는다.

제 9조 ICEIDA의 국별사무소

본 청은 지역 개발 협력 관련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협력국에 국별사무소(Country Office)를 운영한다. 국별사무소의 대표는 사무소장(Country Director)으로, 법률 No. 121/2008 제 7조에서 정한 바에 의거하여 종사한다. 그들은 국별사무소에 의해 도움 받고 있는 국가들의 각 정부들을 상대로 원조개발청을 대표한다. 국별사무소장은 ICEIDA의 청장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하지만 본 규정의 제 10조를 참조하십시오.)

제 10조 아이슬란드 대사관으로 운영되는 국별사무소

만약 장관이 국별사무소가 대사관의 지위를 가지도록 결정했다면, 아이슬란드 외교업무 관련 법률 No. 39/1971에 규정되어있듯이, 장관은 국별사무소장에게 사무소장으로서의 임무에 덧붙여 추가로 특별보수 없이 임시 대사 직무 대행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맡길 것이다.

1항과 관련된 경우에 있어서, 사무소장은 관련 대사와 외교사무 관련 외교부 지시의 대상이 되고, 필요 시 아이슬란드 국민들에게 제공된 영사업무 및 긴급구호를 포함한 해외 아이슬란드 국익 보호의 대상이 된다.

본 조항에 규정된 이슈들을 다루는 것과 관련하여 외교부와의 직접적인 소통이 있는 경우, 대사는 모든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받는다.

외교부는 1항에 의거하여 대사관 역할을 수행하는 국별사무소의 사무소장 및 해당되는 다른 파견 직원들에게 그들이 최선의 방식으로 그들의 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지국에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 필요한 설명을 제공한다.

1항에 의거하여 대사관 역할을 수행하는 국별사무소의 사무소장과 해당되는 다른 직원들은 외교부에 의해 채택된 외교관 여권 및 서비스 여권 관련 규칙에 의거하여 외교관 여권과 서비스 여권을 받게 된다.

본 조항에 의거하여, 사무소장은 업무에 관한 기밀내용을 지켜야 한다.

본 조항에 적용되는 국별사무소 관련 운영비와 사무소장 및 다른 직원들의 임금은 ICEIDA가 지불한다.

제 11조 직원들의 권리 및 임무

ICEIDA의 직원들은 현지에서 고용된 인원을 제외하고 공무원 임금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에 의거하여 월급을 받게 된다. 법률 No. 121/2008 제 7조에 의거하여 해외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법률 No. 39/1971 제 13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해외에 있는 외교부 직원들과 같은 보수를 누리게 된다.

관련된 법률과 규칙들은 현지에서 고용된 직원들에 관해서도 적용되며, 고용조건은 매 경우마다 협상된다.

한편, 법률 No. 70/1996은 원조개발청 직원들 및 그들의 업무에 적용된다.

제 12조 최종조항

본 규정은, 법률 No. 121/2008 제 4조 4항과, 제 6조 5항에 의해 발표되었으며, 즉시 발효된다.

같은 날짜 기준으로, 규정 No. 86/1998은 폐지된다.

2009년 10월 23일, 외교부장관

Össur Skarphéðinsson

Einar Gunnarsson

Regul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Iceland'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No. 894/2009

Art .1 Central Administration

The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is ultimately responsible for Iceland'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f. the first paragraph of Art. 2 of Act No. 121/2008, on Iceland'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rt. 2 Council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o-operation Committee

The Council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hall operate as provided for in Art. 4 of Act No. 121/2008. The Chairman of the Council shall convene its meetings and determine their agenda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In addition to the Council's members, representatives of the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and the Icelandic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ICEIDA) shall attend its meetings. Minutes shall be taken of the Council's meetings.

The Development Co-operation Committee operates as provided for in the third paragraph of Art. 2 of Act No. 121/2008. The Committee is to provide an opinion to the Althingi on a draft parliamentary resolution on the government's Programm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f. the fourth paragraph of Art. 3 of Act No. 121/2008. Committee members shall be members of the Council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referred to in the first paragraph of this Article, cf. the first paragraph of Art. 4 of Act No. 121/2008.

Art. 3 The Icelandic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ICEIDA)

The Icelandic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ICEIDA) participat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s provided for in Act No. 121/2008 in accordance with the Act's objectives, cf. Art. 1 of the Act.

The cost of the Agency's activities and its projects shall be paid by the Treasury.

The Agency is under the direction of the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and operates on the basis of Art. 6 of Act No. 121/2008.

Art. 4 Role of ICEIDA

The principal tasks of the Agency are the following:

1. Iceland's b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gramm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f. Art. 3 of Act No. 121/2008;
2. participation in the work of international committees and institutions in the field of development co-operation which the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may entrust to the Agency;
3. reporting and preparing expert opinions for the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including in connection with the Minister's report to the Althingi;
4. public educational work o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issues of developing countries, with the aim of increasing general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ublic educational efforts sha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annual promotional plan prepared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5. other projects which may be entrusted to the Agency by law, administrative provisions or the decision of the Minister in each instance.

Art. 5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shall be organised and carried out following co-ordinated procedures for bilateral and mult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 confirmed by the Minister.

A special steering group for development co-operation shall operate within the Ministry to advise the Permanent Secretary of State concerning supervision of the operations, professional issues dealt with and obligations in the field of development co-operation. The steering group shall be comprised of the head of division and department heads of the Ministry's development co-operation division, the Director General of ICEIDA and the Permanent Secretary of State, who shall furthermore serve as the group's Chairman.

In carrying out its development co-operation, ICEIDA may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collaboration, work with other providers of development aid, and handle reporting and the preparation of expert opinions in connection with this implementation. The Agency may conclude co-operation contracts with NGOs and other providers of development assistance, as well as contracts for outsourcing projects. In concluding such contracts regard must be had for the Act on Public Procurement as appropriate.

Art. 6 Director General of ICEIDA

The Minister appoints the Agency's Director General, as provided for in the fourth paragraph of Art. 6 of Act No. 121/2008 and provides him/her with a formal statement of duties.

The Director General shall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co-operation work of the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as determined by the Minister and be a member of the special steering group on development co-operation, cf. the the second paragraph of Art. 5 of this Regulation.

The Director General shall be responsible for day-to-day implementation and operations of the Agency and for ensuring that its operations comply with law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as well as the demands resulting from Iceland's international commitments.

The Director General shall determine the Agency's internal organisation.

In other respects, Act No. 70/1996, on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State Employees, shall apply to the Director General and his/her work, in addition to other specific rules arising from the nature of the work.

Art. 7 Employees of ICEIDA

The Director General shall hire the Agency's personnel; the Agency shall set the references to be used as guidelines in selection of employees.

The Director General may grant the Agency's employees unpaid leave of absence to enable them to temporarily undertake other work for the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Similarly, the Ministry's employees may be granted unpaid leave of absence to enable them to temporarily undertake work for the Agency. Hirings as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may last for a maximum of five years and are exempt from the obligation to advertise, cf. the second paragraph of Art. 7 of Act No. 121/2008.

Art. 8 Temporary work appointments in connection with projects abroad

Temporary appointments of ICEIDA for work on specific development projects abroad are subject to Art. 7 of Act No. 121/2008.

Art. 9 Country offices of ICEIDA

The Agency may operate country offices in its co-operation countries where work on reg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s carried out. The leaders of country offices are Country Directors, engaged as provided for in Art. 7 of Act No. 121/2008. They represent the Agency towards the respective governments in the countries served by the country office. Country Directors are responsible towards the Director General of ICEIDA, cf. however, Art. 10 of this Regulation.

Art. 10 Country offices operated as embassies of Iceland

If the Minister has decided that a Country Office shall have the status of an embassy, he/she may entrust the Country Director to serve in addition and without special remuneration as chargé d'affaires ad interim in addition to his/her duties as Country Director, as provided for in Act No. 39/1971, on Iceland's Foreign Service.

In those instances referred to in the first paragraph the Director shall be subject to instructions from the ambassador concerned and the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regarding foreign affairs and protection of Iceland's interests abroad, including consular services and emergency assistance provided to Icelandic citizens when necessary.

In those instances where there are direct communications with the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in handling issues as provided for in this Article, the ambassador shall be kept informed at all stages.

The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shall provide the Director, and as applicable other seconded employees, of the Country Office acting as an embassy in accordance with the first paragraph with the necessary instruction before commencing work in the host state, to enable them to fulfil their duties in this respect in an optimal manner.

The Director and, as applicable, other employees of a Country Office acting as an embassy in accordance with the first paragraph shall receive a diplomatic passport or service passport, in accordance with rules on diplomatic passports and service passports adopted by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The Director shall maintain confidentiality in his/her work pursuant to this Article.

The cost of operating Country Offices as referred to in this Article and salaries to their Directors and other employees shall be paid by ICEIDA.

Art. 11 Rights and obligations of employees

Employees of ICEIDA, other than those recruited locally, shall receive salaries in accordance with general rules on salaries of state employees. Those employees engaged for temporary work abroad, as referred to in Art. 7 of Act No. 121/2008, shall enjoy the same remuneration as enjoyed by employees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broad as provided for in Art. 13 of Act No. 39/1971.

The laws and rules of the state concerned shall apply regarding employees recruited locally and their terms of employment shall be negotiated in each instance.

In other respects, Act No. 70/1996 shall apply to employees of the Agency and their work on its behalf.

Art. 12 Final provisions

This Regulation, which is issued by virtue of the fourth paragraph of Art. 4 and the fifth paragraph of Art. 6 of Act No. 121/2008, shall enter into force immediately.

As of the same date Regulation No. 86/1998 shall be repealed.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23 October 2009

Össur Skarphéðinsson

Einar Gunnarsson

연구자료 연구개발 2015-06-143

신홍공여국 ODA정책과 현황 : 아이슬란드

발	행	2015년 9월
발	행	인 김영목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편	집	인 연구개발팀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우: 13449)
전	화	031)740-0114
팩	스	031)740-0655
홈	페이지	http://www.koica.go.kr
인	쇄	다인스케치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국제협력단에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ISBN 978-89-6469-321-6 93320



신홍공여국 ODA정책과 현황 : 아이슬란드

